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	<p>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대학교는 2014. 1. 15. 백석대학교 A*에게 백석대학교 대학원(근무지:서울) ○ 보직을 부여하고, 각 소재지가 서울인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의 □으로 겸직 발령한 후 법인업무를 전담하게 하면서 2016년도 연봉 160,000천원 전액을 백석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업무 전담교원 인건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3. 1부터 2019. 8.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업무를 전담한 위 A의 인건비 합계 547,500천원을 백석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 <p>* 감사대상기간 중 강의,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全無</p>	<p>【학교법인 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A의 인건비 합계 547,50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경고(4명)

【붙임】

법인업무 전담교원 인건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수령자	지급액	지급기간
2016	-	160,000	2016. 3.~2017. 2.
2017	-	164,400	2017. 3.~2018. 2.
2018	-	158,100	2018. 3.~2019. 2.
2019	-	65,000	2019. 3.~2019. 7.
합계		547,5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이사회 운영 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등을 직무로 행한다고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16. 3. 29. 2015회계연도 결산 안건임에도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사실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붙임】 “이사회 안건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까지 총 29차례 예·결산 등 감사 직무에 해당하는 안건임에도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감사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경고(1명)○ 통보(문책)(2명)

【붙임】

이사회 안건 현황

연번	이사회 개최일	이사회 안건
1	2016.3.29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4. 교원면직 5.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6. 임원선임(안) 심의
2	2016.5.27.	1. 교원 재임용(안) 심의 2. 백석대학교 부속유치원 규칙개정(안) 심의 3. 백석대학교 대학발전 장기계획 '백석비전2020' 제2단계 개정(안) 심의 4.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교 교육용 시설 지분 조정(안) 심의 5. 고정자산 폐기매각(안) 및 손망설 처리(안) 심의 6.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및 대체취득(안) 심의
3	2016.7.18.	1. 탄원서 제출 2. 정관변경(안) 심의 3.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4. 201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교원면직 6.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4	2016.8.26.	7. 교직원 인사 8. 백석대학교 총장 선임 9.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선임 10. 교육용기본재산 학교간 사용용도 변경 허가신청(안) 심의 11. 백석대학교 교비 손실보전 12.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5	2016.10.7.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학과개폐 및 통폐합에 대한 학교장 위임(안) 심의 4.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5. 교육용기본재산 처분기한 연장(안) 심의 6. 교육용기본재산 학교간 사용용도 변경허가 신청(안) 심의
6	2016.11.11.	1. 교육용기본재산 교환허가 신청(안) 심의
7	2016.12.29.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교원 재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4.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5. 2017회계연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예산(안) 심의 6. 백석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 교환계획(안) 심의
8	2017.1.5.	1. 수익용기본재산 수증 취득(안) 심의 2.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3. 백석문화대학교 위치변경 계획변경(안) 심의 4. 백석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 교환허가 신청(안) 심의 5. 임원선임(안) 심의
9	2017.2.2.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연번	이사회 개최일	이사회 안건
		2.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4.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6. 교원인사
10	2017.2.22.	1.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2. 교원 승진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4.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11	2017.3.18.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안) 심의 3.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12	2017.4.21.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4.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5.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안) 심의 6. 백석대학교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 임원선임(안) 심의 8.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선임(안) 심의
13	2017.6.20.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교원인사 4.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5. 교원면직 6. 교육용기본재산 확충(안) 심의
14	2017.8.25.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4. 백석대학교 대학장기발전계획 '백석비전2025'(안) 심의 5. 백석대학교 기채허가신청(안) 심의 6. 백석대학교 총장선임(안) 심의 7. 임원선임(안) 심의 8. 교직원 인사 9.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시설확충(안) 심의
15	2017.9.25.	1. IPP형 일학습병행 제사업 신규 운영대학 신청(안) 심의 2. 교육용시설(교육용기본재산) 취득(안) 심의
16	2017.10.25.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법인회계 및 백석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4.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추진계획(안) 심의 5.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시설확충(안) 심의 6. 지정기부금 수증취득 및 사용계획(안) 심의
17	2017.12.29.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교원 재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연번	이사회 개최일	이사회 안건
		4. 법인일반회계 2017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법인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6.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추진계획(안) 심의 7. 교직원인사 8. 임원선임(안) 심의
18	2018.2.2.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4. 임원선임(안) 심의
19	2018.2.21.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4. 교원 승진임용(안) 심의 5. 교원면직 6.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7. 임원선임(안) 심의 8. 교육용기본재산 활용계획(안) 심의 9. 총장선임(안) 심의
20	2018.4.20.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3.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4. 교원 면직의건 5.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6. 이사장 선출(안) 심의 7. 기부금 수증취득(안) 심의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보고 및 재임용 재심의요청(안) 심의
21	2018.7.2.	1. 제규정 제개정(안) 심의 2. 백석대학교 교육시설확충(안) 심의 3. 2018학년도 제1차 백석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2	2018.8.24.	1.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2. 교원 재임용(안) 심의 3. 교원면직 4. 고정자산 폐기(안) 심의 5. 2018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 징계위원회위원 개선(안) 심의
23	2018.10.29.	1. 법인 정관개정(안) 심의 2. 제규정 개정(안) 심의 3. 교원임용 심의 4. 2018회계연도 백석대학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고정자산 폐기매각(안) 심의 6. 교육용기본재산 시설사용등 심의
24	2018.12.28.	1. 임원선임(안) 심의 2.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안) 심의 3. 2018회계연도 제2차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4.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심의 5. 제규정 개정(안) 심의 6. 백석문화대학교 현장 개정(안) 심의 7. 교원임용(안) 심의

연번	이사회 개최일	이사회 안건
25	2019.1.28.	1. 임원선임(안) 심의 2.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안) 심의 3. 교원임용(안) 심의 4. 규정 개정(안) 심의 5. 백석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VISION2025' 개정(안) 심의 6.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8. 2018학년도 고정자산 폐기 및 매각(안) 심의
26	2019.2.28.	1. 정관개정(안) 심의 2. 규정 제개정(안) 심의 3. 교원임용(안) 심의 4. 교원임용(안) 심의 5. 백석문화대학교 대학발전 장기계획 EAGLE2025 개정(안) 심의
27	2019.4.26.	1. 정관변경(안) 심의 2. 임원선임(안) 심의 3. 제규정 개정(안) 심의 4. 교원임용(안) 심의 5.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6.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안) 심의 7. 고정자산 폐기매각(안) 심의
28	2019.7.2.	1. 정관변경(안) 심의 2. 제규정 개정(안) 심의 3. 백석대학교 교원징계의결요구(안) 심의 4. 교원임용(안) 심의 5. 정년초과 직원임용(안) 심의 6.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안) 심의 7. 고정자산 폐기매각(안) 심의
29	2019.7.29.	1.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2. 임원선임(안) 심의 3. 정관변경(안) 심의 4. 백석문화대학교 △ 선임 5. 2019회계연도 제1차 백석대학교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6. 교육용기본재산 확충(안) 심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	<p>골프 등 회원권 지정목적 외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 제7조의2에 따르면 본 법인이 기부·출연받은 재산 중 지정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17. 10. 25. 개최한 2017학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지정기부금(○○) 수증 취득’ 심의 건에 대해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용도’로 승인받고도, 2018. 4. 11. ‘ㄱ’ 골프 및 빌라회원권 매입(매입액 : 골프 354,000천원, 빌라 120,000천원) 시 사용자 범위를 △ 등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등 【붙임】 “골프 등 회원권 사용자 범위 제한 현황”과 같이 2017. 11. 23.부터 2018. 5. 9.까지 위 ㄱ 골프회원권 등 총 6건의 회원권을 매입(매입액 960,810천원)한 다음 사용자 범위를 △ 등 특정인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범위를 특정인으로 제한한 그등 총 6건의 골프장 회원권이 기부 받은 취지대로 임직원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다양화 하기 바람

【붙임】

골프 등 회원권 사용자 범위 제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취득일	골프장(콘도)명	소재지	회원권 종류	매입 액	회원명의	사용자 범위	
							정회원	지정회원
1	2017. 11. 23.	ㄱ (골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명식 1구좌	354,00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2	2017. 11. 23.	ㄱ (빌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명식 1/10구좌	120,00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3	2018. 4. 19.	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명식 1구좌	200,15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4	2018. 4. 27.	ㅈ	경기도 화성시	기명식 1구좌	212,57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5	2018. 5. 1.	ㅋ	충청남도 천안시	기명식 1구좌	36,06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6	2018. 5. 11.	ㅋ	충청남도 천안시	기명식 1구좌	38,03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	—
합 계					960,81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4	<p>수익용기본재산(아파트)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고,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10. 5. 17.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 아파트를 백석예술대학교 소속 교원인 E과 계약기간 2년(2010. 5. 17.~2012. 5. 16.)에 임대보증금 450,00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시세(4.9억원~9억원) 등을 반영한 임대보증금 조정 없이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합계 32,959천원 상당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있고, * 임대계약 갱신내역 (단위:천원)○ 경징계(1명)○ 경고(2명)○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수익용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대한 E과의 임대 계약을 해지(임대 보증금 반환)하고,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 시세 등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기 바람	

계약 갱신연도	보증금 시세	실제 보증금	수신금리	이자수익 차이
2012	490,000	450,000	3.43%	2,774
2014	570,000	450,000	2.43%	5,839
2016	800,000	450,000	1.48%	7,493
2018	900,000	450,000	1.87%	16,853

- 특히, 법인 A는 2017. 8.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E가 임대계약을 유치한 채 D의 자녀인 F(백석예술대 교원)에게 위 아파트를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 없이 허락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5	<p>법인세 환급금 교비회계 지연 전출</p> <p>○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18회계연도 대학분 법인세 환급금 463,357,880원을 환급받아 2019. 6. 26.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다음 2019. 7. 25.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등 【붙임】 “법인세 환급금 교비회계 지연 전출 현황”과 같이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법인세 환급금 합계 2,188,911천원을 짧게는 7일 길게는 29일 지연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음</p>	○ 주의 (3명)

【붙임】

법인세 환급금 교비회계 지연 전출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대학분 법인세 환급금	법인회계 환급일	교비회계 전출일	지연일수
2019	463,357,880	2019. 6. 26	2019. 7. 25.	29
2018	1차	431,941,620	2018. 6. 21	2018. 7. 6.
	2차	43,191,430	2018. 8. 2.	2018. 8. 24.
2017	1차	558,564,030	2017. 6. 28.	2017. 7. 14.
	2차	55,853,770	2017. 8. 1.	2017. 8. 8.
2016	636,002,560	2016. 6. 23.	2016. 7. 1.	8
합계	2,188,911,29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6	<p>교직원 채용시험 관련서류 부당 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및 제5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 과정을 기반으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을 기록관리기준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백석대학교 사무관리 규칙」 및 「백석문화대학교 사무관리 규칙」 제10조,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교직원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 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처리부서 수준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중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3년(일상 업무) 또는 5년(주요 업무)의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기록물관리 관련 상위법령 및 자체 사무 관리 규칙과 어긋나는 '인사관리실 문서 보존 및 폐기 지침(채용 평가서류는 임면보고 6개월 후 폐기, 2017. 10. 18. ◁부총장 결재)'을 마련한 사실이 있고,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중징계(1명) ○ 주의(1명) ○ 백석문화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2명) ○ 통보(문책)(1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실 문서 보존 및 폐기 지침」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중징계(1명) ○ 백석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3명) ○ 통보(문책)(1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실 문서 보존 및 폐기 지침」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채용과정에서 각 평가단계별[서류심사 및 기초·전 공심사→면접심사]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전형 심사표와 면접전형 심사표를 2018. 5. 18. 일괄 폐기하는 등 【붙임1】 “교직원 채용 평가서류 폐기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 까지 교직원 채용 총 13건, 51명의 채용과정에서 각 평가단계별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면접전형 심사표를 2차례(2018.5.18. / 2019.7.11.)에 걸쳐 일괄 폐기한 사실이 있음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기록물관리 관련 상위법령 및 자체 사무관리 규칙과 어긋나는 ‘인사관리실 문서 보존 및 폐기 지침(채용 평가서류는 임면보고 6개월 후 폐기, 2017. 10. 18. ◇부총장 결재)’을 마련한 사실이 있고, · 그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채용과정에서 각 평가단계별[서류심사 및 기초·전 공심사→면접심사]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전형 심사표와 면접전형 심사표를 2018. 5. 18. 일괄 폐기 하는 등 【붙임2】 “교직원 채용 평가서류 폐기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 까지 교직원 채용 총 6건, 22명의 채용과정에서 각 평가단계별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면접전형 심사표를 2차례(2018. 5. 18. / 2019. 7. 11.)에 걸쳐 일괄 폐기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교직원 채용 평가서류 폐기 현황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자수	합격자수	임용일	평가서류 폐기일
< 교원채용(12회) >								
1	2016-1	교육대학원	코칭심리	2015.11.9. ~ 11.24.	11	1	2016.3.1.	2018.5.18.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		4	1		
2	2016-1	문화예술학부	뮤지컬	특별채용	1	1	2016.3.31.	2018.5.18.
		기독교학부	신학		1	1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	1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2	2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	1	2017.1.1.	2018.5.18.
4	2017-1	기독교학부	조직신학	2016.10.10. ~ 10.25.	4	0	2017.3.1.	2018.5.18.
		기독교학부	구약신학		8	2		
		어문학부	교양영어		24	2		
		경찰학부	경찰학		3	2		
		경찰학부	교정학 및 보호관찰		4	0		
		관광학부	항공 또는 서비스		9	1		
		정보통신학부	암호화, 악성코드, 보안프로그래밍		4	1		
		디자인영상학부	게임 그래픽스		6	2		
		디자인영상학부	실내건축디자인		11	1		
		문화예술학부	보컬		16	0		
5	2017-1	경찰학부	교정보호학	특별채용	1	1	2017.7.1.	2018.5.18.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	1		
		경찰학부	교정보호학		1	1		
		기독교학부	조직신학		1	1		
6	2017-2	기독교학부	신학	특별채용	1	1	2017.9.1.	2018.5.18.
7	2018-1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2018.1.2. ~ 1.16.	16	2	2018.3.1.	2018.5.18.
		기독교학부	아동상담학		5	1		
		보건학부	간호학		6	1		
		교양학부	글쓰기 교육 및 발표와 토론, 사고와 표현		26	1		
8	2018-1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학	특별채용	1	1	2018.6.1.	2019.7.11.
		기독교학부	신학		3	3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1	1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1	1		
		경찰학부	경찰행정학		1	1		
9	2018-2	사범학부	교육공학 (원격교육·교수설계)	2018.7.6. ~ 7.31.	10	2	2018.9.1.	2019.7.11.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 자수	합격 자수	임용일	평가서류 폐기일
10	2018-2	기독교학부	신학	특별채용	1	1	2019.1.1.	2019.7.11.
11	2019-1	교목실	목회학	2018.10.22. ~ 11.7.	29	1	2019.3.6.	2019.7.11.
		사범학부	유아교육		15	0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		11	1		
		ICT학부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4	0		
		보건학부	정형물리치료학 또는 물리적 인자치료학 및 해부생리학		27	1		
		보건학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학		28	0		
		보건학부	치위생학 또는 치의학 또는 보건학 또는 기초학		33	1		
		보건학부	작업치료		8	2		
		문화예술학부	연출 및 신체운동직업		12	0		
12	2019-1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특별채용	1	1	2018.9.1	2019.7.11.
		보건학부	간호과		1	1		
< 지원채용(1회) >								
13	2018-2	대학원기획처	기획 담당	2018.7.23. ~ 7.31.	11	1	2018.9.1	2019.7.11.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	교수설계 담당		7	1		
			편집 및 촬영 담당		8	2		
		평생교육원 (서울)	평생교육		12	-		
합 계					393	51		

【붙임 2】

교직원 채용 평가서류 폐기 현황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 자수	합격 자수	임용일	평가서류 폐기일
< 교원채용(5회) >								
1	2016-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2015.11.9. ~ 11.24.	4	1	2016.3.1.	2018.5.18.
		간호과	정신간호학		5	1		
2	2017-1	외식산업학부	커피음료학 및 식음료	2016.10.10. ~ 10.25.	20	0	2017.3.1.	2018.5.18.
		외식산업학부	서양조리		7	0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6	1		
3	2018-1	안경광학과	조제가공학	2018.1.2. ~ 1.16.	2	1	2018.3.1.	2019.7.11.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2	2		
		간호학과	간호학		6	1		
4	2019-1	교목 (관광,글로벌외식관광)	목화학	2018.10.29. ~ 11.07.	29	0	2019.3.1.	2019.7.1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15	1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5	1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10	2		
		치위생과	치위생학 등		33	1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등		28	5		
		디자인 애니메이션학부	만화 (웹툰)		4	2		
5	2019-1	관광학부	기독교이해	특별채용	1	1		
		글로벌외식관광	기독교이해		1	1		
< 직원채용(1회) >								
6	2018	시설관리처 (직원채용)	시설담당	특별채용	1	1	2018.3.1	2019.7.11.
합 계					179	2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응시자격 제한 등 채용 및 임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직업안정법」 제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용관계를 정할 때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백석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 등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후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자격 및 업적 등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교원을 채용하면서, 전공과목 및 담당업무 등과는 무관하게 전임교원 (연봉제 교원은 제외)의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이며 임용일 이전 가족 전부가 천안 거주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 「사무직원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 「전임교원 재임용규칙」 을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바람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전임교원 재임용규칙」 을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응시자 모두에게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붙임1】 “교직원 채용 응시제한 현황”과 같이 2016 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직원 30명을 채용하면서 전공과목 및 담당업무 등과는 무관하게 전임 교원의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이며 임용일 이전 가족 전부가 천안 거주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으며,</p> <p>※ 백석대학교 「사무직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설립 이념의 구현을 위해 기독교인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16년도 3월부터 전임교원(신규 및 재임용)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용계약서에 백석대학교(이하 대학교회)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대학교회 출석과 가족 전부의 천안 이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전임교원 등에게 서약사항의 이행을 강요하였고, · 특히, 2019학년도 1학기 연구년 대상 교원 선정과정에서는 G와 H를 ‘서약사항 未이행(대학교회 미출석)’ 사유로 선정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으며, - 덧붙여, 2015. 3. 1. 「백석대학교 전임교원승진규칙」을 제정하여, 전임교원은 백석정신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신앙과 학문 세미나’를 이수(1단계 및 2단계)해야만 교수 및 부교수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 적용시기를 부교수 승진(1단계)은 2017년 3월 1일부터, 교수 승진(2단계)은 2018년 3월 1일부터로 정하였음에도 2016. 4. 1. 교원 승진(조교부→부교수) 심사에서 I를 ‘신앙과 학문 세미나’ 1단계를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붙임2】 “교원 승진요건(세미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이수) 부적정 적용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위 I 등 17명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면서 위 규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앞당겨 적용하여 세미나 미이수를 이유로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있음</p>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교원을 채용하면서, 전공과목 및 담당업무 등과는 무관하게 전임교원 (연봉제 교원은 제외)의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이며 임용일 이전 가족 전부가 천안 거주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p>【붙임3】 “교원 채용 응시제한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9명을 채용하면서 전공과목 및 담당업무 등과는 무관하게 전임교원의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이며 임용일 이전 가족 전부가 천안 거주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응시자격을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16년도 3월부터 전임교원(신규 및 재임용)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용계약서에 백석대학 교회 (이하 대학교회)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대학교회 출석과 가족 전부의 천안 이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전임교원 등에게 서약사항의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교직원 채용 응시제한 현황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자 수	합격자 수	임용일	비고
< 교원채용 5회 >								
1	2016-1	교육대학원	코칭심리	2015.11.9. ~ 11.24.	11	1	2016.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		4	1		
2	2017-1	기독교학부	조직신학	2016.10.10. ~ 10.25.	4	0	2017.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기독교학부	구약신학		8	2		
		어문학부	교양영어		24	2		
		경찰학부	경찰학		3	2		
		경찰학부	교정학 및 보호관찰		4	0		
		관광학부	항공 또는 서비스		9	1		
		정보통신학부	암호화, 악성코드, 보안프로그래밍		4	1		
		디자인영상학부	게임 그래픽스		6	2		
		디자인영상학부	실내건축디자인		11	1		
		문화예술학부	보컬		16	0		
3	2018-1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2018.1.2. ~ 1.16.	16	2	2018.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기독교학부	아동상담학		5	1		
		보건학부	간호학		6	1		
		교양학부	글쓰기 교육 및 발표와 토론, 사고와 표현		26	1		
4	2018-2	사범학부	교육공학 (원격교육·교수설계)	2018.7.6. ~ 7.31.	10	2	2016.9.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5	2019-1	교목실	목회학	2018.10.22. ~ 11.7.	29	1	2019.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사범학부	유아교육		15	0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		11	1		
		ICT학부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4	0		
		보건학부	정형물리치료학 또는 물리적인자치료학 및 해부생리학		27	1		
		보건학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학		28	0		
		보건학부	치위생학 또는 치의학 또는 보건학 또는 기초학		33	1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자 수	합격자 수	임용일	비고
		보건학부	작업치료		8	2		
		문화예술학부	연출 및 신체음직임		12	0		

< 직원채용 1회 >

6 2018 (직원)	대학원기획처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 평생교육원(서울)	대학원기획처	기획 담당	2018.7.23. ~ 7.31.	11	1	2018.9.1.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기독교인 우대)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	교수설계 담당		7	1		
			편집 및 촬영 담당		8	2		
		평생교육원(서울)	평생교육		12	-		
합 계					372	30		

【붙임 2】

교원 승진요건(세미나 이수) 부적정 적용 현황

< 2016년도 전임교원 승진기준 >

- 종합평가점수 70점(부교수 승진) 이상, 사회봉사프로그램 참여
- ※ 부교수 승진시 세미나 이수 적용('17. 3. 1.부터) / 전임교원승진규칙

연번	이름	나이	소속	임용일 (현직급 근무년수)	사회 봉사	승진점수	승진	승진탈락 사유
1	-	-	-	2009.03.01. (04년00월)	실시	83.84	x	불참
2	-	-	-	2006.03.01. (08년00월)	실시	77.24	x	불참
3	-	-	-	2011.03.01. (05년01월)	실시	74.91	x	불참
4	-	-	-	2010.03.01. (04년00월)	실시	72.80	x	불참
5	-	-	-	2011.03.01. (04년01월)	실시	72.36	x	불참

< 2017년도 전임교원 승진기준 >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사회봉사프로그램 참여
- ※ 교수 승진시 세미나 이수 적용('18. 3. 1.부터) / 전임교원승진규칙

연번	이름	나이	소속	임용일 (현직급 근무년수)	사회 봉사	승진점수	승진	승진탈락 사유
1	-	-	-	2004.03.01. (06년00월)	실시	91.26	x	불참
2	-	-	-	2004.03.01. (07년00월)	실시	85	x	불참
3	-	-	-	2005.03.01. (06년00월)	실시	83.13	x	불참
4	-	-	-	2001.03.01. (06년00월)	실시	81.11	x	2단계 불참
5	-	-	-	2006.03.01. (06년00월)	실시	79.99	x	불참
6	-	-	-	2003.03.01. (07년00월)	실시	79.48	x	불참
7	-	-	-	1994.03.02. (07년00월)	실시	77.78	x	2단계 불참
8	-	-	-	2004.03.01. (07년00월)	실시	76.97	x	불참
9	-	-	-	2003.03.01. (06년00월)	실시	76.5	x	불참
10	-	-	-	2004.03.01. (07년00월)	실시	76.33	x	불참
11	-	-	-	1998.03.01. (07년00월)	실시	73.01	x	불참
12	-	-	-	2001.03.01. (12년00월)	실시	71.86	x	2단계 불참

【붙임 3】

교원 채용 응시제한 현황

연번	학기	학부(과)	전 공	공고기간	지원자수	합격자수	임용일	비고
1	2016-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2015.11.9. ~ 11.24.	4	1	2016.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간호과	정신간호학		5	1		
2	2017-1	외식산업학부	커피음료학 및 식음료	2016.10.10. ~ 10.25.	20	0	2017.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외식산업학부	서양조리		7	0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6	1		
3	2018-1	안경광학과	조제가공학	2018.1.2. ~ 1.16.	2	1	2018.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2	2		
		간호학과	간호학		6	1		
4	2019-1	교목 (관광,글로벌외식관광)	목회학	2018.10.29. ~ 11.7.	29	0	2019.3.1.	응시자격제한, 담임목사추천서 요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15	1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5	1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10	2		
		치위생과	치위생학 등		33	1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등		28	5		
		디자인 애니메이션학부	만화 (웹툰)		4	2		
합 계					176	1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8	<p>겸직허가 未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등은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고, 「백석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는 교원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절차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 기간 등 포함)를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백석대학교 J은 총장에게 겸직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2017.4.21.부터 △△ 대표 직무를 겸하면서 2018.1.17.부터는 ▷▷ 대표이사직무를 겸하는 등 【붙임】 “겸직허가 未신청 겸직 현황”과 같이 위 J 등 백석대학교 교원 4명은 2018.1.부터 2019.7.까지 △에게 겸직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위 ▷▷ 대표이사등 직무를 겸한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붙임】

겸직허가 未신청 겸직 현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체 명	직 위	기 간
1	-	-	-	△ △	대 표	'17.4.21.~ '19.7.29.
				▷▷	대표이사 사내이사	'18.1.17.~ '19.7.29.
2	-	-	-	▷▷	사내이사	'18.1.17.~ '19.7.29.
3	-	-	-	▷▷	사내이사	'18.1.17.~ '19.7.29.
4	-	-	-	▷▷	사내이사	'18.1.17.~ '19.7.2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9	<p>교원연구년 신청자 인사위원회 未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 교원연구년제규정」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연구년 대상 교원의 자격은 백석대학교(동일법인 소속기관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관기관 포함)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일상적으로 강의와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종사하며, 교직원예배 및 교수회의 참석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4년 이상인 자라야 하고,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이 교원연구년을 신청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제청하고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년 대상 교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연구년 대상 교원을 선정하면서 K 등 9명이 교원연구년을 신청하였음에도 K를 제외한 8명만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2018학년도 1학기에는 L 등 13명이 교원연구년을 신청하였음에도 L을 제외한 12명만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음	○ 경고 (3명)

【참고】

교원 연구년제 신청자 인사위원회 심의 未상정 현황

선정학년도	교원연구년 신청자 현황							심의 상정여부	승인여부	심의일/ 승인일
	연번	소속	직	성명	임용일	근속년수	신청일			
2017학년도 2학기	1	-	-	-	-	19.06년	2017.03.15	○	○	2017.04.05/ 2017.04.12
	2	-	-	-	-	17.06년	2017.03.09	○	○	
	3	-	-	-	-	10.06년	2017.03.09	○	○	
	4	-	-	-	-	11.06년	2017.03.15	○	○	
	5	-	-	-	-	23.06년	2017.03.07	×	×	
	6	-	-	-	-	17.06년	2017.03.07	○	○	
	7	-	-	-	-	18.06년	2017.03.03	○	○	
	8	-	-	-	-	12.06년	2017.03.10	○	○	
	9	-	-	-	-	22.06년	2017.03.23	○	○	
2018학년도 1학기	1	-	-	-	-	10.00년	2017.09.09	○	○	2017.10.11./ 2017.10.23.
	2	-	-	-	-	16.00년	2017.09.14	○	○	
	3	-	-	-	-	24.00년	2017.09.14	○	○	
	4	-	-	-	-	19.00년	2017.09.14	○	○	
	5	-	-	-	-	19.00년	2017.09.15	○	○	
	6	-	-	-	-	12.00년	2017.09.12	○	○	
	7	-	-	-	-	10.00년	2017.09.07	×	×	
	8	-	-	-	-	11.00년	2017.09.08	○	○	
	9	-	-	-	-	24.00년	2017.09.05	○	○	
	10	-	-	-	-	10.00년	2017.09.12	○	○	
	11	-	-	-	-	10.00년	2017.09.11	○	○	
	12	-	-	-	-	10.00년	2017.09.14	○	○	
	13	-	-	-	-	10.00년	2017.09.12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0	범죄처분 통보자 未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기소유예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및 '[별표4] 징계부가금 부가 처리기준' 등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는 2017. 5. 1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M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1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p>○ 백석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3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 “범죄처분 통보자 未조치 현황”과 같이 백석대학교는 2017. 5.부터 2019. 7.까지 위 M 등 교원 2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2019. 8. 감사일 현재 까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 2. 2. 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N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범죄처분 통보자 未조치 현황

연번	사건번호	피 의 자			범죄처분 결과					
		소 속	직 위	성 명	처 분 청	처 분 일	처 분 접수일	죄 명	처 분 내 용	
1	-	-	-	-	□지방검찰청	2017.5.12.	2017.5.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	
2	-	-	-	-	□지방검찰청	2018.10.12.	2018.10.16. 2019.7.17.	자동차관리법위반	기 유 소 예	

【참고】

백석문화대학교 범죄처분 통보자 未조치 현황

사건번호	피 의 자			범죄처분 결과				
	소 속	직 위	성 명	처 분 청	처 분 일	처 분 접수일	죄 명	처 분 내 용
-	-	-	N	근지방검찰청 □지청	2018.1.30.	2018.2.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공소권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1	<p>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는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임용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는 2019. 3. 1. O를 신규채용하면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2019.1.24.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붙임1】 “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백석대학교는 2019. 3. 1. 위 O 등 교원 6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음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는 2019. 3. 1. P를 신규채용하면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2019. 1. 7.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붙임2】 “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백석문화대학교는 2019.3.1. 위 P 등 교원 1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음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3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未실시자에 대해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붙임1】

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임용일	신원조사 여부	결격사유 조회여부	제청 사항		임용 사항	
							결재자	결재일자	결재자	결재일자
1	-	-	-	2019. 3. 1	×	×	총장	2019.01.24	이사장	2019.01.28
2	-	-	-	2019. 3. 1	×	×				
3	-	-	-	2019. 3. 1	×	×				
4	-	-	-	2019. 3. 1	×	×				
5	-	-	-	2019. 3. 1	×	×				
6	-	-	-	2019. 3. 1	×	×				

【붙임2】

신원조사 등 未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임용일	신원조사 여부	결격사유 조회여부	제청 사항		임용 사항	
							결재자	결재일자	결재자	결재일자
1	-	-	-	2019. 3. 1	×	×	총장	2019.01.07	이사장	2019.01.28
2	-	-	-	2019. 3. 1	×	×				
3	-	-	-	2019. 3. 1	×	×				
4	-	-	-	2019. 3. 1	×	×				
5	-	-	-	2019. 3. 1	×	×				
6	-	-	-	2019. 3. 1	×	×				
7	-	-	-	2019. 3. 1	×	×				
8	-	-	-	2019. 3. 1	×	×				
9	-	-	-	2019. 3. 1	×	×				
10	-	-	-	2019. 3. 1	×	×				
11	-	-	-	2019. 3. 1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2	<p>외부강의 등 지연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 Q는 2018. 9. 7. 사전신고 없이 이사의 요청으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니즈를 반영한 스마트홈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사후신고 기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9. 14.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등 【불임1】 "외부강의 지연 신고 현황"과 같이 2018. 9.부터 2019.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Q 등 교원 14명은 총 21회에 걸쳐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사후신고 기일로부터 짧게는 1일 길게는 89일 도과하여 대학에 외부강의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R는 2018. 9. 29. 사전신고 없이 ◇◇의 요청으로 '제17회 색동 어린이 동요대회' 관련 강의를 하고 사후신고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10. 4. 외부강의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4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6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신고를 하는 등 【붙임2】 “외부강의 자연 신고 현황”과 같이 2018. 9.부터 2019.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R 등 교원 6명은 총 12회에 걸쳐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사후신고 기일로부터 짧게는 1일 길게는 24일 도과하여 대학에 외부강의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외부강의 지원 신고 현황

○ 백석대학교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강 의 일 자	신고일자	신고지연 일 수	강 의 기 관
1	-	-	-	2018. 9. 7.	2018. 9. 14.	5	-
2	-	-	-	2018. 10. 6.	2018. 10. 10.	2	-
3	-	-	-	2018. 12. 8.	2018. 12. 11.	1	-
4	-	-	-	2018. 12. 14.	2018. 12. 31.	15	-
5	-	-	-	2019. 1. 25.	2019. 2. 19.	23	-
6	-	-	-	2018. 11. 15.~22	2018. 12. 9.	15	-
7	-	-	-	2018. 11. 9.~16.	2018. 12. 9.	21	-
8	-	-	-	2019. 2. 26.	2019. 5. 28.	89	-
9	-	-	-	2019. 2. 27.	2019. 5. 28.	88	-
10	-	-	-	2019. 5. 9.~10.	2019. 5. 28.	16	-
11	-	-	-	2019. 5. 16.	2019. 5. 28.	10	-
12	-	-	-	2019. 5. 17.	2019. 5. 28.	9	-
13	-	-	-	2019. 5. 23.	2019. 5. 26.	1	-
14	-	-	-	2019. 5. 8.	2019. 5. 25.	15	-
15	-	-	-	2019. 1. 31	2019. 2. 7.	5	-
16	-	-	-	2019. 1. 10.	2019. 1. 15.	3	-
17	-	-	-	2018. 10. 10.	2018. 10. 16.	4	-
18	-	-	-	2018. 10. 26.	2018. 11. 29.	32	-
19	-	-	-	2019. 3. 24.	2019. 4. 6.	11	-
20	-	-	-	2019. 2. 24.	2019. 3. 26.	28	-
21	-	-	-	2018. 11. 23.	2018. 11. 26.	1	-

【붙임2】

외부강의 자연 신고 현황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강 의 일 자	신고일자	신고지연 일 수	강 의 기 관
1	-	-	-	2018. 9. 29.	2018. 10. 4.	3	-
2	-	-	-	2019. 6. 17.~21.	2019. 6. 24.	1	-
3	-	-	-	2018. 12. 9.	2018. 12. 20.	9	-
4	-	-	-	2019. 3. 1.	2019. 3. 8.	5	-
5	-	-	-	2019. 6. 25.	2019. 7. 1.	4	-
6	-	-	-	2019. 2. 12.	2019. 2. 15.	1	-
7	-	-	-	2018. 10. 1.	2018. 10. 12.	9	-
8	-	-	-	2018. 12. 8.	2018. 12. 12.	2	-
9	-	-	-	2019. 5. 18.	2019. 6. 10.	21	-
10	-	-	-	2019. 6. 7.	2019. 6. 10.	1	-
11	-	-	-	2019. 7. 4.	2019. 7. 22	16	-
12	-	-	-	2018. 11. 2.	2018. 11. 28.	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3	<p>제한대상 해당 여부 未확인 의원면직 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협용해서는 아니되고,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는 2017. 2. 20. S의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의원면직을 제청하는 등 【붙임】 “제한대상 해당 여부 未확인 의원면직 제청 현황”과 같이 2017. 2.부터 2019. 6.까지 위 S 등 교원 5명의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의원면직을 제청한 사실이 있음	○ 주의(3명)

【붙임】

제한대상 해당 여부 未확인 의원면직 제청 현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의원면직 신청 일	의원면직 제청 일	퇴직 일
1	-	-	-	2016. 11. 3	2017. 2. 20	2017. 2. 28
2	-	-	-	2017. 2. 14	2017. 2. 20	2017. 2. 28
3	-	-	-	2017. 2. 15	2017. 2. 20	2017. 2. 28
4	-	-	-	2018. 4. 9	2018. 4. 9	2018. 4. 9
5	-	-	-	2019. 6. 30	2019. 7. 5	2019. 6. 3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4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에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에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 ~ 2018회계연도에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예·결산 유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도록 하였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 대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 통보를 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하였는데도,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는 2016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임의적립금 적립 1,161,706천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579,056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557,782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p>【학교법인 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6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8명) <p>○ 백석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임의 적립금 적립 931,469천원)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82,912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73,087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p>【붙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까지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905,547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876,387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					결산					법인회계 법정부담 전입금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납부			비등록금회계 운영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실제 납부			비등록금회계 운영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	임의적립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	임의적립		
2016	852,912	582,912	270,000	0	931,469	843,087	573,087	270,000	220,267	554,008	270,000	
2017	866,440	636,440	230,000	0	1,619,989	853,415	623,415	230,000	75,324	1,230,000	230,000	
2018	886,195	686,195	200,000	0	1,759,786	879,885	679,885	200,000	46,797	926,000	200,000	
합계	2,605,547	1,905,547	700,000	0	4,311,244	2,576,387	1,876,387	700,000	342,388	2,710,008	700,000	

【참고】

백석대학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연 도	예산					결산					법인회계 법정부담 전입금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납부			비등록금회계 운영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실제 납부			비등록금회계 운영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	임의 적립금 적립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	임의 적립금 적립		
2016	2,389,056	1,579,056	810,000	0	1,161,706	2,367,782	1,557,782	810,000	638,068	2,400,000	81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5	<p>임대시설 사용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고, 2014. 4. 교육부에서 통보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개정관련 유의사항(사립대학제도과)」에는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p> <p>【백석대학교】</p> <p>- 백석대학교는 2016.4.28. 교수회관의 3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일괄 납부한 후 2016.5.23. 위 교수회관 1층과 2층을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는 T가 사용한 3월분 상하수도요금 2,193,750원을 징수하고 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하는 등 【붙임1】 "학교시설 이용자 상하수도 요금 집행 현황"과 같이 2016회계 연도부터 2019. 7.까지 위 교수회관 등 11개의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상하수도요금 합계 76,036,313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하고 학교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위 상하수도요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백석문화대학교】</p> <p>-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 4. 29. 창조관의 상하수도 요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일괄 납부한 후 2017. 2. 28.</p>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3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위 창조관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U로부터 징수한 상하수도요금 1,267,500원을 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하는 등 【붙임】 “학교시설 이용자 상하수도 요금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까지 위 구내매점 등 4개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상·하수도요금 합계 31,292,597원을 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고 학교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위 상하수도 요금을 비 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학교시설 이용자 상하수도 요금 집행 현황

(단위:원)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6	-	3	2016.04.28	2,193,750	2016.05.23
		4	2016.05.31	895,350	2016.06.21
		5	2016.06.29	2,171,680	2016.06.21
		6	2016.08.01	1,070,160	2016.10.31
		7	2016.08.31	246,960	2016.10.31
		8	2016.09.30	486,080	2016.11.09
		9	2016.10.31	799,680	2017.03.15
		10	2016.11.30	919,692	2017.03.09
		11	2017.01.02	906,888	2017.03.09
		12	2017.01.31	742,330	2017.03.09
		1	2017.02.28	241,924	2017.06.01
		2	2017.03.30	232,240	2017.04.10
2017	-	3	2017.05.02	659,370	2017.05.30
		4	2017.05.30	901,424	2017.06.08
		5	2017.06.29	614,478	2017.09.07
		6	2017.07.27	869,232	2017.09.07
		7	2017.08.31	223,839	2017.09.19
		8	2017.09.28	319,608	2017.09.19
		9	2017.10.30	821,760	2017.11.30
		10	2017.11.28	700,000	2017.12.29
		11	2017.12.28	764,050	2018.02.27
		12	2018.01.26	549,990	2018.03.30
		1	2018.02.27	219,555	2018.03.30
		2	2018.03.27	515,098	2018.05.23
2018	-	3	2018.04.26	665,400	2018.06.21
		4	2018.05.31	636,760	2018.06.21
		5	2018.06.29	606,560	2018.08.22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9		6	2018.07.31	189,882	2018.08.22
		7	2018.08.30	169,850	2018.10.23
		8	2018.09.28	311,220	2018.10.05
		9	2018.10.30	739,660	2018.10.23
		10	2018.11.27	509,670	2018.12.14
		11	2018.12.28	560,164	2018.12.14
		12	2019.01.29	642,860	2019.01.31
		3	2019.04.30	459,000	2019.05.10
		4	2019.05.31	486,000	2019.06.03
		5	2019.06.28	431,650	2019.07.09
		6	2019.07.31	487,930	2019.09.20
소계				24,961,744	
2016		3	2016.04.28	221,250	2016.05.18
		4	2016.05.31	22,860	2017.02.10
		5	2016.06.29	66,640	2017.02.10
		6	2016.08.01	31,360	2016.10.27
		7	2016.08.31	66,640	2016.10.27
		8	2016.09.30	19,600	2016.10.27
		9	2016.10.31	58,800	2017.02.10
		10	2016.11.30	74,043	2017.02.10
		11	2017.01.02	66,453	2017.02.10
		12	2017.01.31	39,070	2017.02.10
		1	2017.02.28	15,608	2017.03.06
		2	2017.03.30	13,146	2017.04.25
2017		3	2017.05.02	46,794	2017.06.08
		4	2017.05.30	93,544	2017.09.04
		5	2017.06.29	46,794	2017.09.04
		6	2017.07.27	78,624	2017.08.17
		7	2017.08.31	35,122	2017.09.15
		8	2017.09.28	17,280	2017.11.10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9	2017.10.30	55,640	2017.11.16
		10	2017.11.28	43,750	2017.12.24
2016	-	3	2016.04.28	97,500	2016.05.18
		4	2016.05.31	26,670	2017.02.10
		5	2016.06.29	86,240	2017.02.10
		6	2016.08.01.	39,200	2016.10.27
		7	2016.08.31	11,760	2016.10.27
		8	2016.09.30	3,920	2016.10.27
		9	2016.10.31	31,360	2017.02.10
		10	2016.11.30	27,279	2017.02.10
		11	2017.01.02	19,545	2017.02.10
		12	2017.01.31	23,442	2017.02.10
		1	2017.02.28	3,902	2017.03.06
		2	2017.03.30	4,380	2017.04.25
2017	-	3	2017.05.02	25,524	2017.06.08
		4	2017.05.30	46,772	2017.09.04
		5	2017.06.29	25,524	2017.09.04
		6	2017.07.27	43,680	2017.08.17
		7	2017.08.31	13,167	2017.09.15
		8	2017.09.28	8,640	2017.11.10
		9	2017.10.30	51,360	2017.11.16
		10	2017.11.28	35,000	2018.01.15
		소계		1,737,883	
		11	2017.01.02	715,347	2017.02.21
2016	-	12	2017.01.31	136,745	2017.02.17
		1	2017.02.28	31,216	2017.03.09
		2	2017.03.30	17,528	2017.04.07
		3	2017.05.02	114,858	2017.05.25
2017	-	4	2017.05.30	174,332	2017.06.05
		5	2017.06.29	114,858	2017.08.04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8		6	2017.07.27	200,928	2017.08.29
		7	2017.08.31	57,057	2017.09.13
		8	2017.09.28	21,600	2017.09.28
		9	2017.10.30	162,640	2017.11.13
		10	2017.11.28	126,875	2017.12.22
		11	2017.12.28	144,078	2018.03.19
		12	2018.01.26	130,950	2018.03.12
		1	2018.02.27	12,915	2018.03.12
		2	2018.03.27	105,900	2018.05.22
		3	2018.04.26	177,120	2018.06.22
		4	2018.05.31	178,488	2018.06.22
		5	2018.06.29	178,488	2018.08.08
		6	2018.07.31	189,880	2018.08.08
		7	2018.08.30	72,795	2018.08.27
2019		9	2018.10.30	291,090	2018.10.22
		10	2018.11.27	179,600	2018.11.23
		11	2018.12.28	169,010	2019.01.03
		12	2019.01.29	149,790	2019.05.08
		3	2019.04.30	94,500	2019.05.08
		4	2019.05.31	153,000	2019.05.22
2016	-	5	2019.06.28	160,050	2019.06.24
		6	2019.07.31	144,930	2019.07.23
		소계		4,406,568	
		9	2016.10.31	1,117,200	2017.03.07
		10	2016.11.30	1,117,200	2017.03.31
		11	2017.01.02	1,571,418	2017.03.07
		12	2017.01.31	1,090,053	2017.05.15
		1	2017.02.28	288,748	2017.06.01
		2	2017.03.30	389,998	2018.01.10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7		1	2018.02.27	284,130	2018.03.30
		2	2018.03.27	1,535,660	2018.05.25
		3	2018.04.26	1,627,580	2018.07.02
		4	2018.05.31	1,384,480	2018.07.02
		5	2018.06.29	1,028,528	2018.10.31
		6	2018.07.31	1,028,520	2018.10.31
		7	2018.08.30	596,910	2018.10.31
		8	2018.09.28	689,470	2018.10.01
		9	2018.10.30	935,310	2018.10.31
		10	2018.11.27	883,420	2018.11.30
		11	2018.12.28	903,020	2018.12.31
		12	2019.01.29	748,960	2019.01.31
소계				17,220,605	
2016		3	2016.04.28	547,500	2016.10.31
		4	2016.05.31	300,990	2016.10.31
		5	2016.06.29	588,000	2016.10.31
		6	2016.08.01	262,640	2016.10.31
		7	2016.09.30	11,760	2016.10.31
		9	2016.10.31	231,280	2017.04.13
		10	2016.11.30	307,863	2017.04.13
		11	2017.01.02	273,630	2017.04.13
		12	2017.01.31	308,653	2017.04.13
		1	2017.02.28	42,922	2017.04.13
		3	2017.05.02	285,018	2018.04.12
		4	2017.05.30	365,672	2018.04.12
2017		5	2017.06.29	248,406	2018.04.12
		6	2017.07.27	314,496	2019.01.14
		7	2017.08.31	13,167	2019.01.14
		9	2017.10.30	299,600	2019.01.14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8		10	2017.11.28	170,625	2019.01.14
		11	2017.12.28	266,326	2019.01.23
		12	2018.01.26	323,010	2019.01.23
		2	2018.03.27	308,090	2019.01.23
		3	2018.04.26	349,450	2019.01.23
		4	2018.05.31	279,790	2019.01.23
		5	2018.06.29	279,790	2019.01.23
		6	2018.07.31	606,560	2019.01.23
		7	2018.08.30	48,530	2019.01.23
		9	2018.10.30	299,600	2019.01.23
		10	2018.11.27	198,890	2019.01.23
		11	2018.12.28	280,080	2019.01.23
2019		3	2019.04.30	243,000	2019.05.14
		4	2019.05.31	162,000	2019.09.20
		5	2019.06.28	194,000	2019.06.26
		6	2019.07.31	275,370	2019.08.27
소계		8,686,708			
2016	-	3	2016.04.28	247,500	2016.05.18
		4	2016.05.31	137,160	2016.06.21
		5	2016.06.29	407,680	2016.06.21
		6	2016.08.01.	192,080	2016.10.27
		9	2016.10.31	141,120	2017.02.19
		10	2016.11.30	210,438	2017.02.19
		11	2017.01.02	214,995	2017.02.19
		12	2017.01.31	210,978	2017.02.19
		1	2017.02.28	23,412	2017.03.15
		3	2017.05.02	123,366	2017.05.30
2017		4	2017.05.30	267,876	2017.06.19
		5	2017.06.29	187,394	2017.09.19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8		6	2017.07.27	222,768	2017.09.19
		7	2017.08.31	13,167	2017.09.19
		9	2017.10.30	184,040	2017.11.10
		10	2017.11.28	166,250	2017.12.24
		11	2017.12.28	209,568	2018.02.10
		12	2018.01.26	226,980	2018.03.13
		1	2018.02.27	25,830	2018.03.13
		2	2018.03.27	115,530	2018.05.23
		3	2018.04.26	248,920	2018.06.21
		4	2018.05.31	217,080	2018.06.21
		5	2018.06.29	217,080	2018.08.28
		6	2018.07.31	210,980	2018.08.28
2018	-	7	2018.08.30	29,110	2018.08.28
		9	2018.10.30	152,700	2018.10.22
		10	2018.11.27	29,120	2018.12.20
		11	2018.12.28	28,970	2018.12.26
	소계			4,662,092	
	3	2018.04.26	76,590	2018.07.02	
	4	2018.05.31	77,180	2018.07.02	
	5	2018.06.29	77,180	2018.07.19	
	6	2018.07.31	100,210	2018.07.19	
	7	2018.08.30	72,790	2018.08.31	
		8	2018.09.28	62,240	2018.09.28
		9	2018.10.30	95,440	2018.10.25
		10	2018.11.27	92,220	2019.02.26
		11	2018.12.28	82,090	2019.02.26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9		12	2019.01.29	77,310	2019.02.26	
		3	2019.04.30	54,000	2019.05.24	
		4	2019.05.31	72,000	2019.06.05	
		5	2019.06.28	63,050	2019.07.02	
		6	2019.07.31	82,130	2019.09.27	
2018	-	3	2018.04.26	86,160	2018.07.02	
		4	2018.05.31	67,530	2018.07.02	
		5	2018.06.29	67,530	2018.07.19	
		6	2018.07.31	116,030	2018.07.19	
		7	2018.08.30	19,410	2018.08.31	
		9	2018.10.30	100,210	2018.10.25	
		10	2018.11.27	116,500	2019.02.26	
		11	2018.12.28	77,260	2019.02.26	
		12	2019.01.29	57,980	2019.02.26	
		3	2019.04.30	49,500	2019.06.05	
2019		4	2019.05.31	67,500	2019.06.05	
		5	2019.06.28	58,200	2019.07.02	
		6	2019.07.31	67,630	2019.10.07	
소계				2,035,870		
		3	2016.04.28	135,000	2016.05.23	
		4	2016.05.31	80,010	2016.06.27	
2016	-	5	2016.06.29	176,400	2016.06.27	
		6	2016.08.01	78,400	2016.10.27	
		8	2016.09.30	7,840	2016.10.27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7		9	2016.10.31	58,800	2017.02.19
		10	2016.11.30	74,043	2017.02.19
		11	2017.01.02	70,362	2017.02.19
		12	2017.01.31	66,419	2017.02.19
		1	2017.02.28	23,412	2017.03.15
		3	2017.05.02	51,048	2017.5.30
		4	2017.05.30	110,552	2017.06.13
		5	2017.06.29	74,086	2017.08.27
		6	2017.07.27	96,096	2017.08.27
		7	2017.08.31	8,778	2017.09.25
		9	2017.10.30	72,760	2017.11.17
2018		10	2017.11.28	61,250	2017.12.29
		11	2017.12.28	74,222	2018.02.10
		12	2018.01.26	74,205	2018.03.13
		1	2018.02.27	21,525	2018.03.13
		2	2018.03.27	52,950	2018.05.28
		3	2018.04.26	95,740	2018.06.30
		4	2018.05.31	86,832	2018.06.30
		5	2018.06.29	86,830	2018.08.01
		6	2018.07.31	79,110	2018.08.01
		7	2018.08.30	14,550	2018.08.30
		9	2018.10.30	62,030	2018.11.01
		10	2018.11.27	53,390	2018.12.27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11	2018.12.28	62,770	2018.12.27
		12	2019.01.29	57,980	2018.12.27
소계				2,067,390	
2016	-	3	2016.04.28	491,250	2016.10.27
		4	2016.05.31	323,850	2017.02.24
		5	2016.06.29	646,800	2017.02.24
		6	2016.08.01	360,640	2017.06.01
		8	2016.09.30	7,840	2017.06.01
		9	2016.10.31	250,880	2017.06.01
		10	2016.11.30	300,069	2017.06.01
		11	2017.01.02	328,356	2017.06.01
		12	2017.01.31	304,746	2017.06.01
		1	2017.02.28	19,510	2017.06.01
		2	2017.03.30	4,380	2017.06.01
		3	2017.05.02	268,002	2018.02.27
2017		4	2017.05.30	527,248	2018.02.27
		5	2017.06.29	383,504	2018.02.27
		6	2017.07.27	458,640	2018.02.27
		7	2017.08.31	17,556	2018.02.27
		8	2017.09.28	8,640	2018.02.27
		9	2017.10.30	342,400	2018.02.27
		10	2017.11.28	170,625	2018.02.27
		11	2017.12.28	336,182	2018.02.27

회계연도	임차인 [시설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8		12	2018.01.26	353,565	2018.09.04	
		1	2018.02.27	60,270	2018.09.04	
		2	2018.03.27	225,140	2018.09.04	
		3	2018.04.26	426,040	2018.09.04	
		4	2018.05.31	366,620	2018.09.04	
		5	2018.06.29	366,620	2018.09.04	
		6	2018.07.31	374,490	2018.09.04	
		7	2018.08.30	33,970	2018.10.25	
		9	2018.10.30	376,980	2018.10.25	
		10	2018.11.27	247,550	2018.12.31	
		11	2018.12.28	323,540	2018.12.31	
		12	2019.01.29	285,080	2018.12.31	
2019		3	2019.04.30	301,500	2019.05.18	
		4	2019.05.31	297,000	2019.05.27	
		5	2019.06.28	329,800	2019.06.29	
		6	2019.07.31	338,170	2019.07.26	
소계		10,257,453				
합계		76,036,313				

【붙임2】

학교시설 이용자 상하수도 요금 집행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임차인 [건물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6		3	2016.04.29	1,267,500	2017.02.28
		4	2016.05.31	369,570	2017.02.28
		5	2016.06.30	874,160	2017.02.28
		6	2016.08.01	403,760	2017.02.28
		9	2016.10.31	309,680	2017.03.24
		10	2016.11.30	487,125	2017.03.24
		11	2017.01.02	504,261	2017.03.24
		12	2017.01.31	457,119	2017.03.24
		1	2017.02.28	163,884	2017.12.01
		2	2017.03.31	78,870	2017.12.01
		3	2017.05.02	370,098	2017.12.01
		4	2017.05.31	531,500	2017.12.01
2017		5	2017.06.30	370,098	2018.01.17
		6	2017.07.31	463,008	2018.01.17
		7	2017.08.31	35,112	2018.01.17
		9	2017.10.30	436,560	2018.01.17
		10	2017.11.29	323,750	2018.01.11
		11	2017.12.28	388,574	2018.03.12
		12	2018.01.31	423,405	2018.10.24
		1	2018.02.27	120,540	2018.10.24
		2	2018.03.27	466,950	2018.10.24
		3	2018.04.26	651,030	2018.10.24
		4	2018.05.31	62,290	2018.10.24
		5	2018.06.29	622,290	2018.09.17
2018		6	2018.07.31	574,920	2018.09.17
		7	2018.08.30	87,350	2018.09.17

회계연도	임차인 [건물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9		8	2018.09.28	47,880	2018.10.22
		9	2018.10.30	548,780	2018.10.24
		10	2018.11.30	558,210	2018.12.28
		11	2018.12.28	579,480	2018.12.28
		12	2019.01.29	565,340	2018.12.28
		3	2019.04.30	427,500	2019.05.29
		4	2019.05.31	486,000	2019.05.29
		5	2019.06.28	514,100	2019.10.10
		6	2019.07.31	545,900	2019.10.10
		소계			15,116,594
2017		10	2017.11.29	306,250	2017.12.26
		11	2017.12.28	288,156	2018.03.30
		12	2018.01.31	366,660	2018.03.30
		1	2018.02.27	90,405	2018.03.30
		2	2018.03.27	149,230	2018.05.30
2018		3	2018.04.26	325,510	2018.06.21
		4	2018.05.31	366,620	2018.06.21
		5	2018.06.29	366,620	2018.10.24
		6	2018.07.31	395,580	2018.10.24
		7	2018.08.30	53,380	2018.10.24
		9	2018.10.30	353,120	2018.10.24
		10	2018.11.30	325,210	2018.11.26
		11	2018.12.28	405,630	2018.12.27
		12	2019.01.29	372,060	2018.12.27
		3	2019.04.30	171,000	2019.05.31
		4	2019.05.31	252,000	2019.05.31
		5	2019.06.28	320,100	2019.06.28
2019		6	2019.07.31	289,860	2019.07.29
		소계			5,197,391
2016		3	2016.04.29	30,000	2016.05.31

회계연도	임차인 [건물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7	-	4	2016.05.31	26,670	2016.06.30
		5	2016.06.30	43,120	2016.06.30
		6	2016.08.01	27,440	2017.03.28
		9	2016.10.31	66,640	2017.02.24
		10	2016.11.30	23,382	2017.02.24
		11	2017.01.02	23,454	2017.02.24
		12	2017.01.31	15,628	2017.02.24
		1	2017.02.28	11,706	2017.03.10
		3	2017.05.02	12,762	2017.05.26
		4	2017.05.31	21,260	2017.06.09
		5	2017.06.30	12,762	2017.08.31
		6	2017.07.31	30,576	2017.08.31
2018	-	10	2017.11.29	26,250	2018.06.21
		11	2017.12.28	13,098	2018.06.21
		12	2018.01.31	17,460	2018.06.21
		2	2018.03.27	19,250	2018.06.21
		3	2018.04.26	14,361	2018.06.21
		4	2018.05.31	19,290	2018.06.21
		5	2018.06.29	19,290	2018.10.23
		6	2018.07.31	21,090	2018.10.23
		9	2018.10.30	14,310	2018.10.23
		10	2018.11.30	9,700	2018.12.07
		11	2018.12.28	14,480	2018.12.27
		12	2019.01.29	9,660	2018.12.24
소계				543,639	
2016		3	2016.04.29	1,031,250	2016.05.27

회계연도	임차인 [건물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2017	-	4	2016.05.31	350,520	2016.11.21
		5	2016.06.30	862,400	2016.11.21
		6	2016.08.01	376,320	2016.11.21
		7	2016.08.31	325,360	2016.11.21
		8	2016.09.30	458,640	2016.11.21
		9	2016.10.31	243,040	2017.02.21
		10	2016.11.30	327,348	2017.02.21
		11	2017.01.02	277,539	2017.02.21
		12	2017.01.31	312,560	2017.02.21
		1	2017.02.28	300,454	2017.04.17
		2	2017.03.31	61,340	2017.04.13
		3	2017.05.02	212,700	2017.06.12
		4	2017.05.31	361,420	2017.06.12
		5	2017.06.30	212,700	2017.10.19
2018	-	6	2017.07.31	345,072	2017.10.19
		7	2017.08.31	355,509	2017.10.19
		8	2017.09.28	47,520	2017.10.19
		9	2017.10.30	286,760	2017.12.29
		10	2017.11.29	227,500	2017.12.29
		11	2017.12.28	288,156	2018.06.28
		12	2018.01.31	353,565	2018.06.28
		1	2018.02.27	215,250	2018.06.25
		2	2018.03.27	173,300	2018.06.25
		3	2018.04.26	368,600	2018.06.25
		4	2018.05.31	289,440	2018.06.25
		5	2018.06.29	289,440	2018.08.31

회계연도	임차인 [건물명]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세입처리일	
		사용월	지출일	금액		
		6	2018.07.31	279,540	2018.08.31	
		7	2018.08.30	305,730	2018.08.31	
		8	2018.09.28	52,660	2018.10.24	
		9	2018.10.30	233,820	2018.10.24	
		10	2018.11.30	184,450	2018.11.28	
		11	2018.12.28	222,130	2018.12.24	
		12	2019.01.29	202,940	2018.12.24	
소계				10,434,973		
합계				31,292,59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교육용 기본재산 사설학원 부당 지원 등</p> <p>【 교육용 기본재산 사설학원 임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되어,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며,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사립대학 지원과, '10. 6)」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교사라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p>< ①, ②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파면)(2명) <p>< ①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기본재산인 진리동을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하기 바람 <p>○ 고등교육정책 실별도조치</p> <p>< ②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해임)(1명) ○ 중징계(1명) ○ 경징계(1명) ○ 경고(5명) <p>○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원이 사설 학원에 무상으로 강의한 강사료 합계 140,535천 원을 사설학원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대학교는 1998. 12. 1. 교육용 기본재산인 진리동(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6,908.5m²) 4개층(1~4층, 임대면적 1,822.8m²)을 D 개인이 운영하는 신학 교습학원인 '◇◇'(1981. 3. 28.부터 인수받아 운영)에 임대(보증금 110,000천원 및 월임대료 10,000천원)하여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케 하는 등 【붙임1】 "교육용 기본재산 진리동 사설학원 임대현황"과 같이 1998. 12. 1.부터 2019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2번 갱신(2014. 6. 1. 및 2014. 12. 1.) 하여 위 진리동 6개층(1층 및 3~7층, 임대면적 3,721.4m²)을 위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케 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p> <p>- 특히,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V는 1998. 12. 1.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위 사설학원에 사용케 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D 또한 위 계약 당시 △이자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로 그 이후에도 △(2003. 3. 1. ~ 2009. 2. 15. 및 2017. 9. 1. ~ 현재) 및 ▽(2003. 3. 11. ~ 2006. 4. 27. 및 2006. 6. 29. ~ 2008. 12. 18.)로 계속 재직하면서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본인이 운영하였던 사설학원에 임대되어 있는데도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p> <p>【 사설학원 강사료 교비회계 집행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4명)

연번	지적사항	처분
	<p>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2016. 5. 23. ◇◇으로 하여금 학교 D의 아들 W(2017. 7. 1. ~ 현재) 및 X이 운영하는 위 사설 학원과 ‘학원에서 강의한 시간도 대학강의 책임시수로 인정한다(최대 6시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124, 2016. 5. 23.)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6. 6. 13. “2016년 2학기 보직교원 책임시수 지침”에 ‘학점은행제위탁기관의 강의담당 교원의 경우 최대 6시수까지 인정한다’는 내용 및 2016. 8. 24. “교원의 책임시수에 관한 규칙”에 ‘기타 협약사항이나 총장이 허락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를 책임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2016학년도 2학기 Y가 위 학원에서 강의한 90시간의 강의대가 2,430천원을 학원과의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학교의 책임시수 6시수로 인정하여 위 학원에 무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등 【붙임2】 “사설학원 강사료 교비회계 집행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9.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Y 등 대학교원 43명이 위 학원에서 강의한 5,205시간의 강의대가 합계 140,535천원을 학원과의 협약체결 내용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따라 학교의 책임시수 347시수로 인정하여 무상으로 강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D은 본인의 아들들이 위 사설학원을 인수 받아 운영하는걸 알고 있었고, 사설학원에 강의대가를 부당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교재산의 운용책임자인 학교의 장으로서 대학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교육용 기본재산 진리동 사설학원 임대현황

층	용 도	면 적(m ²)	임대면적(m ²)	임대계약 체결일	비 고
지하2	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892.53	-	-	
지하1	이벤트홀, 보컬실 등	1,004.2	-	-	
1	사무실, 교수연구실, 합주실 등	683.4	683.4	1998. 12. 1.	
2	대학원실, 음악대학원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	607.6	-	1998. 12. 1.	2014. 6. 1. 임대계약 해지
3	강의실, 남자양호실 등	607.6	607.6	1998. 12. 1.	
4	강의실, 여자양호실 등	607.6	607.6	1998. 12. 1.	
5	강의실, 컴퓨터실, 녹음실 등	607.6	607.6	2014. 6. 1.	
6	강의실, 원우회실 등	607.6	607.6	2014. 12. 1.	
7	강의실 전임교수실, 도서관서고 등	607.6	607.6	2014. 12. 1.	
8	교수연구실, 서버실 등	607.6	-	-	
옥탑	기계실, 물탱크실 등	75.15	-	-	
합 계		6,908.5	3,721.4		

【붙임 2】

사설학원 강사료 교비회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학기	연번	소속학부	직급	이름	학부 시수	대학원 시수	사설 학원 시수	총 시수	책임 시수	책임시수내 학원강의 인정시수	학원 강의 대가
2016- 2학기	1	-	-	-	6	0	6	12	12	6	2,430
	2	-	-	-	4	0	6	10	9	5	2,025
	3	-	-	-	8	0	4	12	12	4	1,620
	4	-	-	-	8	0	6	14	12	4	1,620
	5	-	-	-	8	0	3	11	12	3	1,215
	6	-	-	-	0	6	6	12	9	3	1,215
	7	-	-	-	3	6	6	15	12	3	1,215
	8	-	-	-	0	9	3	12	12	3	1,215
	9	-	-	-	0	9	3	12	12	3	1,215
	10	-	-	-	0	11	3	14	12	1	405
	11	-	-	-	0	6	3	9	7	1	405
	12	-	-	-	0	6	6	12	7	1	405
소계									37	14,985	
2017- 1학기	1	-	-	-	4	0	6	10	12	6	2,430
	2	-	-	-	6	0	6	12	12	6	2,430
	3	-	-	-	0	3	2	5	9	2	810
	4	-	-	-	0	4	6	10	9	5	2,025
	5	-	-	-	5	0	6	11	9	4	1,620
	6	-	-	-	0	3	6	9	7	4	1,620
	7	-	-	-	5	0	6	16	9	4	1,620
	8	-	-	-	0	9	3	12	12	3	1,215
	9	-	-	-	6	3	6	15	12	3	1,215
	10	-	-	-	0	9	3	12	12	3	1,215
	11	-	-	-	7	3	2	12	12	2	810
	12	-	-	-	7	0	3	10	9	2	810
	13	-	-	-	0	10	6	16	12	2	810
	14	-	-	-	0	10	3	13	12	2	810
	15	-	-	-	0	10	3	13	12	2	810
	16	-	-	-	0	11	3	14	12	1	405
	17	-	-	-	0	11	6	17	12	1	405
	18	-	-	-	9	0	4	13	10	1	405
	19	-	-	-	0	6	2	8	7	1	405
소계									54	21,870	
2017- 2학기	1	-	-	-	4	0	3	7	12	3	1,215
	2	-	-	-	6	0	6	12	12	6	2,430
	3	-	-	-	0	6	6	12	12	6	2,430
	4	-	-	-	0	4	6	10	9	5	2,025
	5	-	-	-	0	4	2	6	9	2	810
	6	-	-	-	5	0	6	11	9	4	1,620

학기	연번	소속학부	직급	이름	학부 시수	대학원 시수	사설 학원 시수	총 시수	책임 시수	책임시수내 학원강의 인정시수	학원 강의 대가
2018-1학기	7	-	-	-	7	0	4	11	10	3	1,215
	8	-	-	-	6	0	4	10	9	3	1,215
	9	-	-	-	0	9	3	12	12	3	1,215
	10	-	-	-	0	6	6	12	9	3	1,215
	11	-	-	-	0	9	3	12	12	3	1,215
	12	-	-	-	0	9	3	12	12	3	1,215
	13	-	-	-	0	9	3	12	12	3	1,215
	14	-	-	-	7	3	2	12	12	2	810
	15	-	-	-	0	10	2	12	12	2	810
	16	-	-	-	6	4	2	12	12	2	810
	17	-	-	-	4	4	3	11	9	1	405
	18	-	-	-	4	0	6	10	5	1	405
	19	-	-	-	0	11	1	12	12	1	405
	20	-	-	-	0	11	1	12	12	1	405
	21	-	-	-	2	6	3	11	9	1	405
	소계									58	23,490
2018-2학기	1	-	-	-	0	2	6	8	9	6	2,430
	2	-	-	-	6	0	3	12	12	3	1,215
	3	-	-	-	0	3	6	9	9	6	2,430
	4	-	-	-	6	0	6	12	12	6	2,430
	5	-	-	-	0	3	2	5	9	2	810
	6	-	-	-	5	2	3	10	12	3	1,215
	7	-	-	-	7	0	4	11	12	4	1,620
	8	-	-	-	5	0	6	11	9	4	1,620
	9	-	-	-	0	8	5	13	12	4	1,620
	10	-	-	-	0	8	3	11	12	3	1,215
	11	-	-	-	0	9	3	12	12	3	1,215
	12	-	-	-	0	9	6	15	12	3	1,215
	13	-	-	-	4	0	6	10	7	3	1,215
	14	-	-	-	0	9	3	12	12	3	1,215
	15	-	-	-	0	9	3	12	12	3	1,215
	16	-	-	-	6	3	6	15	12	3	1,215
	17	-	-	-	0	9	4	13	12	3	1,215
	18	-	-	-	0	9	3	12	12	3	1,215
	19	-	-	-	4	6	4	14	12	2	810
	20	-	-	-	7	3	2	12	12	2	810
	21	-	-	-	0	11	6	17	12	1	405
	22	-	-	-	0	3	6	9	4	1	405
	소계									71	28,755
2018-2학기	1	-	-	-	6	0	6	12	12	6	2,430
	2	-	-	-	0	3	6	9	9	6	2,430
	3	-	-	-	6	0	6	12	12	6	2,430
	4	-	-	-	0	6	3	9	12	3	1,215
	5	-	-	-	0	4	6	10	9	5	2,025
	6	-	-	-	0	7	6	13	12	5	2,025
	7	-	-	-	0	4	2	6	9	2	810

학기	연번	소속학부	직급	이름	학부 시수	대학원 시수	사설 학원 시수	총 시수	책임 시수	책임시수내 학원강의 인정시수	학원 강의 대가
2019- 1학기	8	-	-	-	5	0	6	11	9	4	1,620
	9	-	-	-	4	0	6	10	7	3	1,215
	10	-	-	-	0	9	3	12	12	3	1,215
	11	-	-	-	6	3	6	15	12	3	1,215
	12	-	-	-	0	9	4	13	12	3	1,215
	13	-	-	-	0	9	3	12	12	3	1,215
	14	-	-	-	7	3	2	12	12	2	810
	15	-	-	-	1	6	3	10	9	2	810
	16	-	-	-	0	10	5	15	12	2	810
	17	-	-	-	0	9	3	12	10	1	405
	18	-	-	-	0	3	6	9	4	1	405
	소계								60	24,300	
	1	-	-	-	3	0	6	12	12	6	2,430
	2	-	-	-	0	3	6	9	12	6	2,430
	3	-	-	-	0	2	6	8	9	6	2,430
	4	-	-	-	3	3	6	12	12	6	2,430
	5	-	-	-	0	6	6	12	12	6	2,430
	6	-	-	-	7	0	6	13	12	6	2,430
	7	-	-	-	0	6	3	9	9	3	1,215
	8	-	-	-	4	0	3	7	7	3	1,215
	9	-	-	-	0	6	6	12	9	3	1,215
	10	-	-	-	4	2	6	12	9	3	1,215
	11	-	-	-	0	9	3	12	12	3	1,215
	12	-	-	-	0	9	6	15	12	3	1,215
	13	-	-	-	0	6	3	9	9	3	1,215
	14	-	-	-	0	10	6	16	12	2	810
	15	-	-	-	0	8	3	11	10	2	810
	16	-	-	-	7	3	3	13	12	2	810
	17	-	-	-	0	9	3	12	10	1	405
	18	-	-	-	0	11	3	14	12	1	405
	19	-	-	-	3	6	3	12	10	1	405
	20	-	-	-	0	3	6	9	4	1	405
소 계								67	27,135		
합 계								347	140,53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7	<p>수당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 제46조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 3. 8. 교육부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각종 수당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공문 시행일 이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 원칙) 등에 따라 지급액 회수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사학감사담당관-1196(2018. 3. 8.)- 백석대학교는 2018. 1. 18. 부총장의 결재('17. 2. 24.)만으로 Z에게 '2017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자체점검' 명목으로 수당 25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19. 2.까지 부총장 결재만으로 위 Z 등 교직원 29명에게 '2017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자체점검' 등 명목으로 수당 합계 30,500,7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0명)○ 시정(회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한 수당 합계 20,267,250원('18. 4. 이후 지급액)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붙임】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내용	지급일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8.4. 이후 지급액
1	2017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자체점검	2018.01.18	-	-	-	250,000	-
			-	-	-	500,000	-
			-	-	-	500,000	-
			-	-	-	500,000	-
			-	-	-	500,000	-
			-	-	-	500,000	-
			-	-	-	750,000	-
			-	-	-	750,000	-
			-	-	-	750,000	-
2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2018.02.20	-	-	-	375,000	-
			-	-	-	375,000	-
			-	-	-	358,500	-
			-	-	-	375,000	-
			-	-	-	375,000	-
			-	-	-	375,000	-
			-	-	-	750,000	-
			-	-	-	750,000	-
			-	-	-	750,000	-
			-	-	-	750,000	-
3	대학 제규칙 정비	2018.04.10	-	-	-	500,000	500,000
			-	-	-	500,000	500,000
			-	-	-	1,000,000	1,000,000
			-	-	-	1,000,000	1,000,000
			-	-	-	1,000,000	1,000,000
4	2018 교비회계 발전전략 재정운영계획수립	2018.04.10	-	-	-	350,250	350,250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5	제 부서 하위 규정 정비	2018.11.02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연번	내용	지급일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8.4. 이후 지급액
6	2018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자체점검	2019.01.17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	-	-	300,000	300,000
			-	-	-	300,000	300,000
			-	-	-	500,000	500,000
			-	-	-	300,000	300,000
			-	-	-	300,000	300,000
			-	-	-	750,000	750,000
7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2019.02.21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342,000	342,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	-	-	750,000	750,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	-	-	375,000	375,000
합계						30,500,750	20,267,25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8	<p>내용연수 未경과 차량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3항에 차량 운반구는 내용연수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백석문화대학교 자산관리 규칙」 제21조에는 내용연수(차량운반구 : 5년)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는 2014. 1. 21.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3년이 되지 아니한 업무용차량 에쿠스VS500(매입가 117,990천원, 주행거리 89,400km)을 2016. 8. 23.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음 <p>* 37,000천원에 매각</p> <p>※ 2016. 9. 1. 백석문화대학교에서 백석예술대학교로 AA가 이취임 하고, 백석문화대학교는 D가 취임하였으며, 2016. 12. 7. 백석문화대학교는 현대자동차 EQ900 자가용 리무진 5.0 프레스티지 차량 구매(매입가 151,600천원)</p>	<p>○ 경고(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19	<p>교재 판매 수익금 未징수</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세입 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과 백석정신아카데미** 간의 <기독교의 이해> 교재 출판 및 판매 협약서(계약기간 : 2017. 6. 1부터 2년간)”에는 인쇄비용을 제외한 교재판매 수익금 중 90%를 매년 6월, 12월에 학교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 백석대 내에서 운영하는 지점</p> <p>** 대학교에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이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설치한 대학기관</p> <p>-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는 2017회계연도에 ◇◇ [대표 J(~2019.7.29.)] 이 판매한 교재 9,000권의 수익금 30,930,100원 중 학교 배분액 27,837,090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붙임】 “교재 판매 수익금 未징수 현황”과 같이 2017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위 ◇◇이 판매한 교재 총 29,170권의 수익금 97,151,750원 중 학교 배분액 합계 87,436,58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4명)</p> <p>○ 시정</p> <p>- 교재 판매 수익금 중 학교 배분액 87,436,580원을 ◇◇으로부터 징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붙임】

교재 판매 수익금 未징수 현황

(단위 : 원)

회계 연도	판매량	인쇄비 (인쇄량)	수익금 (판매액 - 인쇄비)	수익금 배분		판매 기간
				학교 (90%)	백향 (10%)	
2017	54,515,200 (9,000권)	23,585,100 (13,600권)	30,930,100	27,837,090	3,093,010	2017.6.1.~ 2018.2.28.
2018	122,565,000 (20,170권)	56,343,350 (23,600권)	66,221,650	59,599,490	6,622,160	2018.3.1.~ 2019.2.28.
합계	177,080,200 (29,170권)	79,928,450 (37,200권)	97,151,750	87,436,580	9,715,17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0	<p>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는 2008. 2. 22. 2014년 2월 위치변경(일부이전)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ㅋ 임야($1,351m^2$)를 취득하고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2016년 재산세 1,623,571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붙임】 “교육용 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치변경(일부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위 임야 등 54필지(합계 $181,010m^2$)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345,900,315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p>* 위치변경 계획 신청(변경)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 5. 13.) “위치변경 계획 신청”- ('08. 5. 26.) “위치변경 계획 승인” / 이전시기 2014년 2월- ('13. 2. 26.) “위치변경 계획 변경 승인 신청”- ('13. 2. 28.) “위치변경 계획 변경 신청 승인” / 이전시기 2017년 2월- ('17. 1. 5.) “위치변경 계획 변경 승인 신청”- ('17. 2. 27.) “위치변경 계획 변경 신청 승인” / 이전시기 202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천안시 ㅋ 공장 용지 등 54필지(합계 $181,010m^2$)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위치변경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재산세 납부에 따른 교비손실을 최소화 하기 바람

【붙임】

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현황

(단위: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m ²)	펼치 취득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 금액				합계
						2016	2017	2018	2019	
1	-	-	임야	1,351	2008-02-22	1,623,571	1,717,085	1,746,731	1,804,324	6,891,711
2	-	-	공장 용지	23,652	2008-02-22	37,082,619	38,254,270	38,410,321	39,054,451	152,801,661
3	-	-	공장 용지	2,588	2008-02-22	2,444,651	2,585,785	2,598,556	2,687,457	10,316,449
4	-	-	답	1,067	2008-09-16	308,728	323,058	324,887	319,950	1,276,623
5	-	-	전	5,603	2008-09-16	1,325,572	1,384,364	1,396,277	1,689,498	5,795,711
6	-	-	전	384	2008-09-16	214,014	212,749	215,510	212,280	854,553
7	-	-	전	747	2008-09-16	230,527	239,934	246,223	249,335	966,019
8	-	-	전	1,047	2008-10-24	1,169,240	1,236,442	1,257,650	1,299,221	4,962,553
9	-	-	전	165	2008-10-24	53,406	55,622	57,082	57,838	223,948
10	-	-	임야	55,041	2009-01-21	1,475,028	1,624,999	1,648,262	1,562,862	6,311,151
11	-	-	전	238	2009-04-02	63,780	66,776	67,782	66,781	265,119
12	-	-	답	3,074	2009-04-17	835,376	870,218	893,506	947,515	3,546,615
13	-	-	임야	2,777	2009-12-21	502,334	533,784	553,626	516,372	2,106,116
14	-	-	임야	231	2009-12-21	37,142	39,468	41,311	38,503	156,424
15	-	-	임야	529	2009-12-21	85,058	90,384	94,606	88,174	358,222
16	-	-	전	641	2009-12-21	207,478	216,088	221,754	224,692	870,012
17	-	-	답	1,310	2009-12-30	478,324	485,503	410,399	410,371	1,784,59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m ²)	필지 취득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 금액				합계
						2016	2017	2018	2019	
18	-	-	답	1,190	2009-12-30	365,245	370,764	312,997	327,926	1,376,932
19	-	-	답	1,545	2009-12-30	474,205	481,369	406,370	425,754	1,787,698
20	-	-	답	285	2009-12-30	94,516	95,838	80,690	84,624	355,668
21	-	-	답	1,065	2009-12-30	326,879	331,818	280,118	293,480	1,232,295
22	-	-	답	3,065	2009-12-30	940,738	954,950	806,165	844,619	3,546,472
23	-	-	답	2,010	2009-12-30	616,927	626,249	528,676	553,894	2,325,746
24	-	-	답	2,142	2009-12-30	582,101	606,378	622,606	660,240	2,471,325
25	-	-	답	2,483	2009-12-30	674,770	702,912	721,722	765,348	2,864,752
26	-	-	답	2,295	2009-12-30	780,319	812,144	834,326	844,843	3,271,632
27	-	-	답	1,850	2009-12-30	567,818	576,397	486,592	509,802	2,140,609
28	-	-	답	386	2009-12-30	99,078	103,129	105,892	112,350	420,449
29	-	-	답	1,286	2009-12-30	349,477	364,054	373,795	396,390	1,483,716
30	-	-	답	2,566	2009-12-30	697,325	726,408	745,847	790,932	2,960,512
31	-	-	답	1,977	2009-12-30	537,260	559,668	574,645	609,380	2,280,953
32	-	-	답	1,862	2009-12-30	1,165,614	1,196,922	1,255,566	1,316,305	4,934,407
33	-	-	답	29	2009-12-30	10,916	11,525	11,854	11,975	46,270
34	-	-	전	110	2009-12-30	32,472	34,272	35,428	35,794	137,966
35	-	-	답	2,241	2009-12-30	609,005	634,404	621,382	690,755	2,555,546
36	-	-	답	1,269	2009-12-30	344,857	359,240	368,854	391,150	1,464,101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m ²)	필지 취득일	연도별 재산세 납부 금액				합계
						2016	2017	2018	2019	
37	-	-	답	294	2009-12-30	79,896	83,228	85,456	90,620	339,200
38	-	-	답	3,673	2009-12-30	998,159	1,039,789	1,067,615	1,132,148	4,237,711
39	-	-	전	2,707	2009-12-31	1,915,619	1,966,824	2,063,449	2,063,309	8,009,201
40	-	-	임야	2,000	2009-12-31	180,890	194,310	204,386	195,997	775,583
41	-	-	전	3,898	2009-12-31	1,056,040	1,114,912	1,150,973	1,470,859	4,792,784
42	-	-	공장 용지	10,748	2010-01-26	17,376,567	17,968,022	18,100,395	18,465,571	71,910,555
43	-	-	과도	1,268	2010-02-25	410,424	427,457	438,665	444,476	1,721,022
44	-	-	답	128	2010-02-25	35,159	36,610	37,580	39,882	149,231
45	-	-	임야	18,390	2010-03-31	2,040,618	2,179,445	2,279,856	2,171,879	8,671,798
46	-	-	임야	228	2010-03-31	64,728	67,409	69,136	69,991	271,264
47	-	-	전	873	2010-03-31	269,411	280,405	287,754	291,391	1,128,961
48	-	-	전	922	2010-03-31	223,147	232,823	237,872	301,568	995,410
49	-	-	전	845	2010-04-15	260,770	271,412	278,525	282,046	1,092,753
50	-	-	전	790	2010-04-15	161,759	168,392	172,715	183,290	686,156
51	-	-	답	1,203	2010-06-22	753,079	773,306	811,195	850,438	3,188,018
52	-	-	전	433	2015-02-11	19,680	20,495	21,030	21,310	82,515
53	-	-	답	1,289	2015-02-11	111,340	114,295	119,904	125,588	471,127
54	-	-	전	1,220	2015-02-11	55,451	57,746	59,254	60,042	232,493
합 계				181,010		83,421,123	86,483,867	86,845,786	89,157,609	345,900,31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1	<p>감사 처분사항 未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용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교육부가 백석문화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2015년 회계부분 감사에서 교육용시설 용도로 취득한 “백석문화센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처분 요구하였는데도,*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2910(2015.10.15.)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통보(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는 2015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결과 임대시설로 활용($11,591.8\text{m}^2$) 중인 교육용기본재산인 백석문화센터($25,313.15\text{m}^2$)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만 제출(2016. 1. 8.)한 다음 2017. 6. 9.부터 2019.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백석문화센터 1층(천안시 동남구 소재) 일부(221.63m^2)를 ‘<u>임대</u>’에 임대(계약기간 2017. 11. 1. ~ 2019. 10. 31.)하고, 임대계약을 갱신(계약기간 2019. 11. 1. ~ 2020. 10. 31.) 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징계(1명)○ 경징계(2명)○ 통보(문책)(2명)

처분서 감사결과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2	<p>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사업 관련 간접비 未징수</p> <p>○ 「백석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간접비의 징수 대상과제는 본 대학 구성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용역포함) 및 사업비로 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간접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간접비 계상비율만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8. 17. ☆☆으로부터 2016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사업비 39,303천원을 지원받았는데도(연구책임자 AB) 10%에 해당하는 3,930천원을 간접비로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경고(3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3	<p>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未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고,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임대료를 1개월에 297천원(평당 16,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는 입주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까지 소유물을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19. 4. 1. 주식회사 ▷▷(대표 J)과 학생복지동 310호(18평)에 대하여 입주계약(보증금 3,240천원, 임대료 월 297천원)을 체결한 이후 2019. 7. 31. 입주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입주업체 요청에 따라 2019. 8. 21.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물을 반출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1개월분 임대료 297천원(18평×16,500원)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시정(회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未징수한 창업보육 센터 임대료 297천원을 ▷▷으로부터 징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p>K-Move스쿨(세계로)사업 집행잔액 未반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와 ●●이 체결한 「K-Move스쿨(세계로) 협약서(2015.5.26.)」 제6조에 따르면 대학은 협약 종료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2015년 K-Move스쿨(세계로) 취업 실적 파악 등 협조요청(2016.1.22.)」에 따르면 사업비는 승인된 목적과 내용에 맞게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 2. 29. 위 「2015년 K-Move스쿨(세계로) 사업」을 완료하면서 2019. 8. 21. 감사일 현재 까지 지원 사업비 232,000천원 중 잔액 25,806천원*을 ●●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 기타반환금 510천원 및 이자 270천원 포함</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발명신고서 등 직무발명 관련 서류 未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백석문화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내용 설명서(명세서), 선행기술자료 조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 AC는 【붙임】 “직무발명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이 2011. 1. 31. 3건의 직무발명 (특허)을 하고도 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내용설명서 (명세서), 선행기술자료 조사서를 2019. 8. 21. 감사일 현재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AC가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해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붙임】

직무발명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

연번	출원·등록인			권리	출원일자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속	직급	성명						
1	-	-	-	특허	2011.01.31	-	-	2013.03.28	-
2	-	-	-	특허	2011.01.31	-	-	2013.05.21	-
3	-	-	-	특허	2011.01.31	-	-	2013.06.1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6	<p>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p> <p>○ 「백석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고, 「백석대학교 장학금 지급 시행 세칙」 제2조에 따르면 성적우수 장학금은 성적평균이 3.0이상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성적향상 장학금 A는 이전 학기 평점 2.5이하인 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성적향상 장학금 B는 이전 학기 학사경고자(평점 1.5미만)로서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하고, 부서추천 장학금은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중 성적이 2.0이상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p> <p>【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관련】</p> <p>- 백석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에 직전학기(2015학년도 2학기) 14학점 취득, 성적 평균이 2.96인 AD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1,359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지급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AD 등 학생 12명이 기준학점 및 기준성적이 미달되는데도 성적우수 장학금 합계 14,05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성적향상 장학금 지급 관련】</p> <p>- 백석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에 이전학기(2015학년도 1학기) 15학점 취득, 평점 2.83과 직전학기 평점 3.96점을 받은 AE 학생에게 성적향상장학금 6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지급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p>	○ 경고(4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2016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위 AE 등 학생 2명이 기준성적이 미달되는데도 성적향상장학금 합계1,10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부서추천 장학금 지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직전학기(2018학년도 1학기) 평점 1.85을 받은 1학년 AF 학생에게 부서추천 장학금 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

지급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현황

1. 성적우수 장학금

(단위 : 천원)

연번	해당학기	소속학부	학년	성명 (학번)	기준		실제		지급액
					성적	학점	성적	학점	
1	2016-1학기	-	4	-	3.0	15	2.96	14	1,359
2	2016-2학기	-	1	-	3.0	15	2.89	19	1,317
소 계									2,676
3	2017-1학기	-	2	-	3.0	15	2.83	19	1,317
4	2017-1학기	-	3	-	3.0	15	2.82	18	1,254
소 계									2,571
5	2018-2학기	-	1	-	3.0	15	2.97	18.5	1,756
6	2018-2학기	-	1	-	3.0	15	2.94	16.5	1,317
7	2018-2학기	-	1	-	3.0	15	2.89	18.5	1,317
8	2018-2학기	-	1	-	3.0	15	2.75	18.5	878
9	2018-2학기	-	1	-	3.0	15	2.5	17.5	878
10	2018-2학기	-	1	-	3.0	15	2.44	17.5	878
11	2018-2학기	-	1	-	3.0	15	2.62	17.5	878
12	2018-2학기	-	1	-	3.0	15	2.97	16.5	878
소 계									8,808
합 계									14,055

2. 성적 향상 장학금

(단위 : 천원)

연번	해당학기	소속학부	장학금명	학년	성명 (학번)	기준		실제		지급액
						이전 학기 성적	학점	성적	학점	
1	2016-1학기	-	성적 향상 (A등급)	2	-	2.5	3.5	2.83	3.96	600
2	2016-2학기	-	성적 향상 (B등급)	3	-	1.5 미만	2.5	1.5	2.82	500
합계										1,1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7	<p>해외교류 장학금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은 보훈장학금 등 19개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기준은 「백석대학교 장학금 지급 시행 세칙」 제2조에 따라 지급하고, 그 중 해외교류 장학금은 CCG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어학교육원 운영규칙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해외교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17학년도 하계 단기연수생 파견 계획(국제교류처 ◇, 2017. 4. 24)"에 따르면 해외교류 장학금은 600천원에서 2,000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수 종료 후 성적증명서 未 제출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백석대학교는 2017학년도 1학기 하계 단기연수생 파견 계획을 수립하면서 AG 학생 등 15명이 참가한 위 단기연수생 파견은 "비학점 프로그램"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도, 성적증명서 제출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수립 후 【붙임】 "해외교류 장학금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G 등 학생 15명에게 해외교류 장학금 합계 9,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붙임】

해외교류 장학금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학기	연수기관	소속학과	장학금명	학 번	성 명	지급액
1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2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3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4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5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6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7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8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9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0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1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2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3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4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15	2017학년도-1 (단기)	중국	-	해외교류	-	-	600
합 계							9,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8	<p>학생 해외 교류 선발 관련 문서 임의파기</p> <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백석대학교 사무관리 규칙」 제2조,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대학 내 각 부서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대학이 접수한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모든 교직원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처리 완료된 일반 문서류는 진행 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보존상자에 단위업무별로 넣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라인(15년 국가기록원, '18년 교육부)」 및 「백석대학교 사무관리 규칙」 제38조(별표5)에 따르면 학사 및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등은 3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백석대학교 AH는 2017. 3. 27. 2016학년도 하반기 내부 행정감사에서 '사무관리 규칙 未준수(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문서관리 미흡)'로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2017학년도 하계단기연수생(미국 등 6개국 32명) 파견 관련 1차 서류전형 자료 전체(신청서, 어학시험 성적증명서 등</p>	<p>○ 경고(1명)</p> <p>○ 통보(문책)(1명) <별도조치></p> <p>○ 고발</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5종)를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견 학생들은 파견 종료 후(2017. 10월 일시 미상), 탈락 학생들은 탈락 확정 후(2017. 6. 29일 이후, 일시 미상) 폐기하는 등</p> <p>【붙임】 “해외교류학생 선발 관련 서류 임의파기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2018학년도 2학기 선발 까지 총 18차례의 해외교환학생 546명을 선발하면서 1차 서류전형 자료 7종** 전체를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p> <p>* 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문서를 생산·관리하고, 완결된 문서는 단위업무별로 편철 및 보관하기 바람</p> <p>** 교환학생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학생서약서,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수학계획서, 개인 정보 동의서</p>	

【붙임】

해외교류학생 선발 관련 서류 임의파기 현황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1	1학기 교환학생 파견	40	한 학기	미국, 캐나다, 중국, 대만, 일본	36	미국, 일본, 중국, 대만,	36	JLPT N2 이상	TOEIC 800 이상	IBT70이상또는 TOEIC700이상	치박사범전 문대학 HSK3급	교환학생 신청서	X	3년	2015.10.21.	2016.10.	-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전 학년 성적 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2016	2	1학기 장기연수 파견	9	한 학기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필리핀	8	미국, 태국, 필리핀, 러시아, 일본	8	JLPT N2 이상	기준없음					장기연수 신청서	X	3년	2015.10.21.	2016.10.	영어권200 중국 80 일본/필리핀 100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전 학년 성적 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3	하계 단기연수생 파견	71	4주~8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몰타, 중국, 일본, 필리핀	70	중국, 뉴질랜드, 미국, 몰타,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70	기준없음					참가신청서	X	3년	2016.4.29	2016.10.	중국 60/70 영어권/스페 인 200 일본/필리핀 100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4	2학기 교환학생 파견	87	한 학기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57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캐나다	57	JLPT N2 이상	TOEIC 800 이상	IBT70이상또는 TOEIC700이상	기준없음	교환학생 신청서	X	3년	2016.4.18	2017.4.	-		
5	2학기 장기연수 파견	8	한 학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2	캐나다, 러시아	2	JLPT N2 이상		기준없음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6	동계 단기연수생 파견	49	3주~8주	미국, 영국, 몰타,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41	미국, 영국, 몰타,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필리핀,	41			기준없음	학생 서약서	X	영어권200 일본/러시아 100						
소계		264		214		214						참가신청서	X				영어권200 일본/필리핀 100 대만 80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전 학년 성적 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7	1학기 교환학생 파견	79	한 학기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일본	62	중국, 대만, 일본	62	JLPT N2 이상	TOEIC 800이상	IBT70이상또는 TOEIC700이상	기준없음	교환학생 신청서	X	3년	2016.11.4	2017.10.	-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전 학년 성적 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장기연수 신청서	X						
2017	8	1학기 장기연수 파견	7	4개월	캐나다, 일본, 러시아	1	일본	1	JLPT N2 이상	기준없음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3년	2016.11.4	2017.10.	영어권200 러시아/일본 100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전 학년 성적 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9	하계 단기연수생 파견	38	4주	미국, 영국, 몰타, 필리핀, 중국, 스페인	46	미국, 영국, 몰타, 중국, 필리핀	32	기준없음					참가신청서	X	3년	2017.5.12	2017.10.	영어권/유럽 200 필리핀 100 중국 60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10	2학기 교환학생 파견	87	한 학기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49	중국, 대만, 일본, 미국	41	JLPT N2 이상	선발 후 ML College 자체 테스트	IBT70이상또는 TOEIC700이상	치박사범전 문대학 HSK3급	교환학생 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학생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수학계획서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3년	2017.4.21	2018.4.	-	
11	2학기 장기연수 파견	7	한 학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5	미국, 캐나다	4	JLPT N2 이상	기준없음				장기연수 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학생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수학계획서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3년	2017.5.12	2018.4.	영어권200 러시아/일본 100
12	동계 단기 연수생 파 견	55	3~8주	미국, 영국, 몰 타, 뉴질랜드, 캐 나다, 필리핀, 일 본, 중국	33	미국, 영국, 몰타,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일본, 중국	33	기준없음				참가신청서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학생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학계획서	X	3년	2017.11.3	2018.4.	영어권200 일본/필리핀 100 중국70	
소계		537		410		387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13	1학기 교환학생 파견	87	한 학기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일본	78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일본	60	JLPT N2 이상	선발 후 ML College 자체 테스트	IBT70이상또는 TOEIC 700이상	치박사범전 문대학 HSK3급	교환학생 신청서	X	3년	2017.11.3	2018.10.	-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전학년 성적증명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2018	14	1학기 장기연수 파견	5	한 학기	미국, 캐나다, 일본	2	미국	2	JLPT N2 이상	기준없음				장기연수 신청서	X	3년	2017.11.3	2018.10.	영어권 200 일본 100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15	하계 단기연수생 파견	75	2~8주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필리핀, 캐나다	43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필리핀, 캐나다	41	기준없음				참가신청서	X	3년	2018.4.20	2018.10.	-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학년도	연번	구분	계획 인원	계획		신청 인원	선발		어학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경비처리 (단위:만원)
				기간	국가		국가	인원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접수서류	보관 여부	보존 기간	문서 생성시기	파기시 점
16	2학기 교환학생 파견	89	한 학기	중국, 대만, 일본	58	중국, 일본, 대만	49	JLPT N2 이상	기준없음	치박사범전 문대학 HSK3급	교환학생 신청서	X	3년	2018.4.13	2019.4.	-	
17	2학기 장기연수 파견	5	한 학기	미국, 캐나다, 일본	2	미국	2	JLPT N2 이상	기준없음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18	동계 단기연수생 파견	35	3주~8주	미국, 영국, 몰타,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일본	7	뉴질랜드, 필리핀, 몰타, 캐나다	5	기준없음	기준없음		학생 서약서	X					
소계		833			600		546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X					
총계		833			600		546				수학계획서	X					
											어학시험 성적 증명서	X					
											참가신청서	X					
											보호자 동의서 및 서약서	X					
											학생 서약서	X					
											개인정보 동의서	X					
											수학계획서	X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29	<p>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과목 대체인정 등 부당</p> <p>○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4호 및 5호에 따르면 학교규칙으로 학위의 수여,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백석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9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백석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본 대학원 학생은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하고, 「백석대학교 대학원학위수여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자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학년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13.10.25. 대학원 교무처장 전결)[*]에 따르면 2014학년도 신학대학원(목회학)의 경우 졸업을 위한 전공필수 이수학점[*]이 82학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p> <p>* 참고자료1 별첨</p> <p>- 백석대학교는 전공필수 과목의 대체 인정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2016학년도 전기(17.2월 학위수여) 신학대학원(목회학) 졸업 사정 대상자 AJ가 2016. 6. 10. 제출한 전공필수 과목 대체 인정 청원서를 근거로 전공필수 과목 '신학III'을 대신하여 전공선택 과목인 '바울과 교회'를 전공필수 과목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징계(1명)○ 경고(23명)○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1.부터 2019. 8. 까지 졸업한 신학대학원 학생 중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이 교육과정기준 보다 부족한 AI등 68명의 졸업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대체인정(총장 전결, 대학원 제1283, 2017.1.19.)하는 등 【붙임】 “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과목 대체 및 졸업사정 시 전공 필수학점 부족 현황(‘D’)”과 같이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2018학년도 후기 졸업생까지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자 위 AJ 등 총 89명이 제출한 대체인정 청원서를 근거로 적계는 1과목(2학점)에서 많게는 6과목(12학점)까지 총 132개의 전공선택 과목 대체를 상세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인정*(총장 전결)하였으며 이 중 68명은 매 학년도별 총장 전결**로 정한 졸업 전공필수 학점보다 적계는 2학점에서 많게는 14학점까지 부족하게 된 사실이 있음</p> <p>* 참고자료2 별첨</p> <p>** 참고자료1 별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백석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17. 1. 19. 총장 전결로 전공필수 과목의 전공선택 과목 대체인정(4학점) 이후에도 전공필수 취득 학점(76학점)이 이수 기준*(82학점) 보다 6학점 부족한 AI 대학원생(학번 20141883)에 대하여 2016학년도 전기 대학원 졸업 사정회의(17.1.25.)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하는 등 【붙임】 “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과목 대체 및 졸업사정 시 전공 필수학점 부족 현황(‘E’)”과 같이 2017. 2월부터 2019. 8월까지 위 AI 대학원생 등 54명이 매 학년도별 교육과정(총장 전결)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기준 보다 적계는 2학점에서 많게는 10학점이 부족 한데도 졸업사정회의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p>* 2014학년도 대학원 교육과정 제(개)정(대학원 제1283, 2013.10.25.)</p>	

참고1】

학년도별 교육과정 결재 현황

학년도	결재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일자	문서번호	졸업이수 학점
2010	2009.04.21.	2009.04.11.	-	필수65학점+전선18학점이상=83
2011	개정 없음	-	-	-
2012	2011.10.10.	2011.10.21	-	필수65학점+전선36학점이상=101
2013	2012.11.29.	2012.11.24.	-	필수65학점+전선20학점이상=101
2014	2013.10.25.	2013.10.21	-	필수82학점+전선20학점이상=102
2015	2014.05.27.	2014.05.24	-	필수82학점+전선20학점이상=102
2016	2015.11.16.	2015.11.13	-	필수80학점+전선22학점이상=102
2017	개정 없음	-	-	-
2018	2017.10.25.	2017.10.13	-	필수82학점+전선20학점이상=102
2019	2019.05.01.	2019.04.26	-	필수80학점+전선12학점이상=92

【참고2】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결재 현황

구분	결재일	문서번호
2016 전기	2017.1.19.	-
2016 후기	2017.7.12.	-
2017 전기	2018.1.8.	-
2017 후기	2018.7.4.	-
2018 전기	2019.1.7..	-
2018 후기	2019.7.16.	-

【붙임】

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과목 대체 및 졸업사정 시 전공필수학점 부족 현황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2016학년도 전기>(2017.2.학위수여) (16명)												
1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시간표 중복 및 교회사역(신약III과락)	바울과교회	2	2016.06.10.	80	78	2	
2	-	-	설교방법론	2	조직신학III과 중복	전도설교의실제	2	2016.08.29.	80	78	2	
3	-	-	교회헌법/행정	2	동 과목 미개설(휴복학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1.	65	70		
4	-	-	교회사 I (초대/중세)	2	편입생으로 이수 못함(편입학)	기독교영성의역사	2	2016.08.29.	80	82		
5	-	-	예배학	2	동 과목 미개설(편입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1.	82	82		
6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동 과목 미개설(휴복학생)	기독교영성의역사	2	2016.09.01.	65	72		
7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미수강에 따른 대체 청원(휴복학생)	기독교영성의역사	2	2016.09.06.	65	74		
			예배학	2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8	-	-	예배학	2	예배학 미개설(휴복학생)	그리스도중심적예배의이론과실제	2	2016.09.08.	65	70		
9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강의과목 설명을 잘못들음(편입생)	사역의이해 II	2	2016.08.29.	82	72	10	6
			교회헌법/행정	2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2.	82			
10	-	-	예배학	2	예배학 폐강(휴복학생)	그리스도중심적예배의이론과실제	2	2016.09.08.	65	68		
11	-	-	예배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1.	65	80		
12	-	-	예배학	2	편입관계로 미수강(편입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1.	80	78	2	
13	-	-	예배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2.	65	72		
14	-	-	예배학	2	동 과목 미개설(휴복학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6.09.02.	65	76		
15	-	-	석의방법론	2	동 과목 미개설(휴복학생)	신약의중심주제	2	2016.08.29.	65	74		
16	-	-	예배학	2	대체청원(편입생)	그리스도중심적예배의이론과실제	2	2016.09.01.	80	76	4	2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대체 전(D=B-C)	대체 후(E=B-C+A)

<2016학년도 후기(2017.8.학위수여)> (10명)

1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베드로전후서	2	2017.02.27.	80	74	6	2
			설교방법론	2		신약석의와설교작성	2	2017.02.28.				
2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조직신학II과락)	구원론특강	2	2017.03.02.	80	78	2	
3	-	-	조직신학 I (신론/인간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이단사상비판	2	2017.02.28.	65	68		
4	-	-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칼빈의기독교강요 I	2	2017.03.02.	80	83		
5	-	-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대체청원(편입생)	하나님나라관점에서본교회론특강	2	2017.03.02.	80	76	4	
			설교설습	2		교회력과설교	2					
6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휴복학생)	종교개혁이후유럽교회사	2	2017.03.07.	80	76	4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칼빈의생애와사상	2					
			설교방법론	2		신약석의와설교작성	2					
7	-	-	설교방법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신약석의와설교작성	2	2017.02.27.	80	80		
8	-	-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웨스트민스터소요리문답강해	2	2017.03.03.	80	74	6	2
			설교방법론	2		신약석의와설교작성	2					
9	-	-	설교설습	2	대체청원(휴복학생)	신약석의와설교작성	2	2017.03.03.	80	80		
10	-	-	목회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목회리더십	2	2017.02.28.	80	76	4	2

<2017학년도 전기(2018.2.학위수여)> (9명, 13과목)

1	-	-	신약 I (공관복음/사도행전)	2	교회사역과 알바로 수강을 못함 (신약 I 과락)	마가복음	2	2017.08.31.	82	78	4	
			교회헌법/행정	2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	-	-	구약 I (오경과전기역사)	2	동 과목 미개설(군휴복학)	이사야	2	2017.08.31.	65	74		
3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대체청원	교회사속의신앙고백연구	2	2017.08.29.	82	76	6	4
4	-	-	교회헌법/행정	2	대체청원(휴복학생)	세례와성찬의이론과실제	2	2017.08.31.	65	78		
5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조직신학II과락)	성령론특강	2	2017.08.29.	82	76	6	4
6	-	-	구약 I (오경과전기역사)	2	대체청원(재입학)	이사야	2	2017.08.29.	65	78		
			예배학	2	대체청원(재입학)	현대예배이해	2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대체 전(D=B-C)	대체 후(E=B-C+A)		
7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6학차에 미개설되어 대체청원(편입학)	한국교회사특강	2	2017.08.28.	82	72	10	6
			기독교윤리	2		기독교사회윤리	2					
8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복학 후 개설되지 않아 대체청원(휴복학생)	한국교회사특강	2	2017.08.29.	82	76	6	4
9	-	-	기독교윤리	2	대체청원(휴복학생)	기독교사회윤리	2	2017.08.29.	65	73		
			예배학	2		현대예배이해	2					

<2017학년도 후기(2018.8.학위수여) > (14명, 20건)

1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 및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휴복학생)	구원론특강	2	2018.07.02.	82	76	6	4
2	-	-	교회헌법/행정	2	대체청원(편입생)	교회예전의실제	2	2017.12.05.	82	76	6	4
3	-	-	설교방법론	2	대체청원(편입생)	그리스도중심적예배의이론과실제	2	2018.03.06.	82	70	12	8
			교회헌법/행정	2		교회예전의실제	2					
4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졸업을 위해 대체청원	칼빈과개혁신학	2	2018.03.06.	82	76	6	4
5	-	-	교회헌법/행정	2	복학 후 과목이 변경되어 대체 청원(휴복학)	교회예전의실제	2	2018.03.06.	82	76	6	4
6	-	-	신약II(바울서신)	2	대체청원(재입학)	신약강해와설교II	2	2018.03.08.	82	74	8	4
			목회학	2		전도전략과전도훈련법	2					
7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편입생)	칼빈의기독교강요III	2	2018.03.08.	82	76	6	4
8	-	-	구약II(후기역사와예언)	2	대체청원(휴복학생)	구약강해와설교III	2	2018.03.30.	82	80	2	
9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칼빈과개혁신학	2	2018.07.11.	82	78	4	2
10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미개설로 인해서 대체청원(휴복학생)	신약강해와설교II	2	2018.03.05.	82	76	6	4
11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편입생)	구원론특강	2	2018.03.08.	82	74	8	4
			교회헌법/행정	2		교회예전의실제	2					
12	-	-	기도의신학과실제	2	대체청원(편입생)	칼빈의기독교강요III	2	2018.03.29.	82	74	8	2
			구약II(후기역사와예언)	2		구약강해와설교III	2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종교개혁이후유럽교회사	2						
13	-	-	교회헌법/행정	2	대체청원	교회예전의실제	2	2018.03.08.	82	76	6	4
14	-	-	기독의신학과실제	2	대체청원(휴복학생)	칼빈과개혁신학	2	2018.02.28.	82	78	4	
			교회헌법/행정	2		교회예전의실제	2					

<2018학년도 전기(2019.2.학위수여) > (14명, 29과목)

1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대체청원(편입생)	영성신학의이론과실제	2	2018.08.28.	80	72	8	6
2	-	-	구약 I (오경과전기역사)	2	대체청원(편입생)	신명기	2	2018.08.28.	80	76	4	
			신약 I (공관복음/사도행전)	2		마태복음	2					
3	-	-	조직신학 I (신론/인간론)	2	대체 청원(편입생)	칼빈의기독교강요 I	2	2018.08.30.	80	68	12	
			구약II(후기역사와예언)	2		여호수아	2					
			교회사 I (초대/중세)	2		종교개혁사특강	2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아우구스티누스의생애와사상	2					
			구약 I (오경과전기역사)	2		창세기	2					
			신약II(바울서신)	2		바울과영성	2					
4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 청원(편입생)	종교개혁사특강	2	2018.08.28.	80	72	8	
			신약 I (공관복음/사도행전)	2		마가복음	2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구원론특강	2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하나님 나라관점에서본교회론	2					
5	-	-	목회학	2	대체청원	영성목회와영적지도	2	2018.08.27.	80	76	4	
6	-	-	교회사 I (초대/중세)	2	대체청원(휴복학생)	아우구스티누스 생애와 사상	2	2018.08.30.	82	74	8	4
			조직신학 I (신론/인간론)	2		칼빈의기독교강요 I	2					
7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대체청원(재입학)	창조신학특강	2	2018.08.27.	65	74		
8	-	-	구약 I (오경과전기역사)	2	대체청원(재입학)	출애굽기	2	2018.08.28.	65	80		
9	-	-	목회학	2	대체청원(편입생)	사역의이해	2	2018.08.27.	80	74	6	4
10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구원론특강	2	2018.08.28.	82	70	12	4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종말론	2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개혁주의생명신학	2		창조신학특강	2					
11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편입생)	아우구스티누스생애와사상	2	2018.08.27.	82	74	8	4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언약신학 특강	2					
12	-	-	교회사 I (초대/중세)	2	대체청원(편입생)	종교개혁사특강	2	2018.08.30.	80	74	6	2
			신약 I (공관복음/사도행전)	2		누가복음	2					
13	-	-	신약 I (공관복음/사도행전)	2	대체청원	마가복음	2	2018.08.29.	80	78	2	
14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대체청원(편입,복학)	마가복음	2	2018.08.31.	82	72	10	8

<2018학년도 후기(2019.8.학위수여)> (26명, 43과목)

1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대체과목 인정요청(휴복학생)	요한서신 · 유다서	2	2019.07.16.	82	76	6	4
2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대체과목 인정요청(휴복학생)	신약강해와설교IV(요한계시록)	2	2019.07.16.	82	72	10	8
3	-	-	설교실습	2	대체청원(휴복학생)	구약강해와설교II(사무엘서)	2	2019.02.26.	82	76	6	2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종말론특강	2					
4	-	-	조직신학 I (신론/인간론)	2	시간표관리 제대로 못해서(휴복학생)	성령론특강	2	2019.03.04.	82	74	8	4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부흥운동의역사	2					
5	-	-	목회진로 I	1	6학차 졸업 필수과목 누락하여 대체 청원 (휴복학생)	목회진로II	1	2019.02.28.	82	72	10	5
			성경읽기와필사IV	2		성경읽기와필사 I	2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신약강해와설교IV(요한계시록)	2					
6	-	-	목회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목회리더형성과정과훈련	2	2019.02.28.	82	78	4	2
7	-	-	신약II(바울서신)	2	대체청원(신약II과락)	신약강해와설교II	2	2019.03.06.	82	70	12	10
8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요한서신 · 유다서	2	2019.03.05.	82	72	10	8
9	-	-	개혁주의생명신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칼빈의기독교강요2	2	2019.07.16.	82	78	4	2
10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과목개설이 안되어 대체청원(휴복학생)	부흥운동의역사	2	2019.03.04.	82	72	10	4
			석의방법론	2		구약강해와설교II(사무엘서)	2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성령론특강	2					

연번	학번	성명	미수강 과목		미수강사유	대체 과목		청원일	전공필수학점 현황			
			전공필수과목명	학점		전공선택과목명	학점(A)		이수 기준(B)	실제 이수(C)	부족학점 현황	
									대체 전(D=B-C)	대체 후(E=B-C+A)		
11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휴복학생)	부흥운동의역사	2	2019.07.16.	82	74	8	4
			신약II(바울서신)	2		갈라디아서	2					
12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대체청원(휴복학생)	종말론특강	2	2019.07.16.	82	70	12	8
			석의방법론	2		귀납적성경공부방법론	2					
13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휴복학생)	부흥운동의역사	2	2019.03.05.	82	76	6	4
14	-	-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대체청원(재입학)	종말론특강	2	2019.03.08.	82	72	10	6
			목회학	2		돌봄목회와정신건강	2					
15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체청원(휴복학생)	요한서신·유다서	2	2019.03.04.	82	74	8	6
16	-	-	조직신학II(기독론/구원론)	2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휴복학생)	성령론특강	2	2019.02.28.	82	68	14	4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	부흥운동의역사	2					
			구약II(후기역사와예언)	2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	사무엘상·하	2					
			신약II(바울서신)	2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	신약강해와설교II	2					
			목회학	2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	영성목회와영적지도	2					
17	-	-	목회학	2	기 수강과목 대체청원(휴복학생)	목회자를위한현장교회론	2	2019.03.05.	82	76	6	4
18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체청원(군휴복학생)	사도들의설교와신학	2	2019.07.16.	82	74	8	6
19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체청원(휴복학생)	요한서신·유다서	2	2019.07.16.	82	72	10	8
20	-	-	기독교윤리	2	대체청원(휴복학생)	기독교윤리학개론	2	2019.03.05.	82	72	10	6
			석의방법론	2		신약강해와설교I	2					
21	-	-	교회사II(종교개혁/근대)	2	대체청원(휴복학생)	부흥운동의역사	2	2019.02.27.	82	70	12	4
			신약II(바울서신)	2		신약강해와설교II	2					
			조직신학III(교회론/종말론)	2		종말론특강	2					
			신약 I(공관복음/사도행전)	2		마태복음	2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요한복음	2					
22	-	-	목회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교회와커뮤니케이션	2	2019.02.25.	82	76	6	4
23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체청원(휴복학생)	마태복음	2	2019.07.16.	82	74	8	6
24	-	-	목회학	2	대체청원(휴복학생)	목회리더형성과정과훈련	2	2019.02.28.	82	76	6	4
25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체청원(휴복학생)	요한서신·유다서	2	2019.07.16.	82	72	10	8
26	-	-	신약III(공동서신/요한문헌)	2	대상자 수				68명	54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0	<p>교육봉사활동 학점부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무시 험 검정 합격기준'에 따르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직이론 및 교직 소양 : 18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이고, 「유치원 및 초등·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과부 고시 제2012-27호, 교육부 고시 제2014-43호, 제2014-48호, 제 2015-73호, 제2016-104호 제2016-106호, 제2017-126호)」 제6조에 따르면 교육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 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3~2018년)」에 따르면 교육봉사활동은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 봉사를 실시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받아 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4학년 학생 AL이 2019. 3. 25.부터 5. 23. 까지 ■■(경기도 냐시)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45시간 했는데도 60시간 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 "교육봉사 활동 이수시간 허위 작성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K 등 9명이 허위내용의 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적사항	처분
	<p>1학기 학생 총 9명이 교육봉사활동을 실제 활동 시간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8시간이 부족한데도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p> <p>※ AM은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총 시간란에 '60'이라 기재하고 활동시간란은 공란으로 비워 두어 학생이 임의로 활동일자와 시간을 기재하게 함</p>	

【붙임】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 허위 작성 현황

(단위 : 시간)

연 번	학 년 도	학 과	학년	이름	학번	교육봉사기간 (2019년)	허위제출 교육봉사 활동시간	실제 교육봉사 활동시간	취득 학점	허위 작성 내용
1	2 0 1 9	-	4	-	-	3.25. ~ 5.23.	60	45	2	실제 활동시간에 1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2			4	-	-	3.25. ~ 5.20.	60	32	2	실제 활동시간에 28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3			2	-	-	3.22. ~ 5.24.	60	40	2	실제 활동시간에 20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4			2	-	-	4.8. ~ 5.27.	60	45	2	실제 활동시간에 1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5			2	-	-	4.15. ~ 5.17.	60	35	2	실제 활동시간에 2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6			2	-	-	2.25. ~ 5.17.	60	36	2	실제 활동시간에 24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7			2	-	-	4.17. ~ 6.5.	60	45	2	실제 활동시간에 1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8			2	-	-	3.8. ~ 6.14.	60	45	2	실제 활동시간에 1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9			2	-	-	3.8. ~ 6.14.	60	45	2	실제 활동시간에 15시간 추가하여 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 후 제출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1	<p>강사 수업시간 초과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백석대학교 강사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6시간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문화예술학부 강사 AN에게 수업시간을 8시간 배정하는 등 【불임】 “강사 수업시간 초과배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위 AN 등 시간강사 8명에게 기준대비 적게는 6시간 30분에서 많게는 14시간까지 수업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주의(3명)

【붙임】

강사 수업시간 초과배정 현황

연번	학기	소속학과	강사명	규정 시수	실제 담당 시수
1	2018학년도 1학기	-	-	6시간	8시간
2			-	6시간	7시간
3			-	6시간	7시간
4		-	-	6시간	6시간30분
5			-	6시간	7시간
6			-	6시간	7시간
7		-	-	6시간	14시간
8		-	-	6시간	7시간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2	<p>현장실습수업 학점 인정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백석대학교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연수 운영규칙」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실습 기관은(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3. 본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 4.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부 및 부서에서 의뢰하여 심사한 후, 인정한 기관) 실습생의 전공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 연관성,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으로서의 적합성 및 교육 담당자의 적합성 및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후생복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연수 등을 통한 인정학점은 최대 15학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백석대학교 J는 담당지도학생인 AO학생이 전공과 관련이 없는 유통업체인 '▲▲'에서 현장실습(2018. 3. 5. ~</p>	○ 경고(9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6. 17.)을 하였음에도 2018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점 (15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붙임】 “현장실습수업 학점 인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총 5명의 학생이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음에도 각각 15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p>	

【붙임】

현장실습수업 학점 인정 부적정 현황

연번	이수학기	학과	학번	성명	현장실습 기관명	업종	실습 내용	실습 시작일	실습 종료일	지도 교수	인정 학점
1	2018학년도 1학기	—	—	—	▲▲	유통업	행정 업무	3. 5.	6. 17.	—	15학점
		—	—	—	▶▶	식당	주방	3. 5.	6. 15.	—	15학점
	2018학년도 2학기	—	—	—	▼▼	금속 제조	마케팅	8. 27.	12. 14.	—	15학점
		—	—	—	◀◀	카페	매니저	8. 27.	12. 14.	—	15학점
2	2019학년도 1학기	—	—	—	◆◆	유통업	사원	3. 4.	6. 25.	—	15학점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3	<p>성적정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4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적의 오류, 누락, 학생의 이의 제기 등으로 성적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담당 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정정 할 수 있고,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끝난 후 최종 확인된 성적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이 성적누락, 기재(입력)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하여야 함에도,- 백석문화대학교 AP는 2016학년도 2학기 학생 AQ이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16.12.29~'17.1.4.)에 제기한 '전공 실기 IV(보컬)'교과목 중 '실기고사 점수 누락' 부분을 정정('17.1.6.)하면서 정정 사유에는 없었던 '과제 및 기타' 영역 점수 20점을 관련 증빙서류 없이 12점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고,- 백석문화대학교 AR은 2019학년도 1학기 AS의 성적을 성적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지필고사 점수 24점을 25점 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성적정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원들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기 바람

【참고】

성적정정 부적정 현황

학기	과목명	담당교원			학생 인적사항			정정내용					비고	
		소속	직급	성명	학과	학번	성명	출석	지필고사	실기고사	과제 및 기타	총점	학점	
2016 - 2학기	전공 실기 IV (보궐)	-	-	-	-	-	-	20	-	51	12	83	B	· '과제 및 기타' 증빙 서류 누락 (20점 → 12점)
2019 - 1학기	성인 간호 실습 I	-	-	-	-	-	-	20	25	24	16	85	B+	· 지필고사 접수 기재 착오 (24점 → 25점)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4	<p>강의계획서 전산입력기간 未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각 교과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강의계획서를 백석 문화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강의 계획서는 수강신청 실시 1주일 전까지 입력하여 수강 학생들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 AT는 2016 학년도 1학기 '운영체제 서버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입력마감일(2016.2.12)을 13일 도과하여 2016. 2. 25. 백석문화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붙임】 '강의계획서 전산입력기간 未준수 현황'과 같이 위 강사 AT 등 교원 27명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38개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입력마감일을 짧게는 1일 길게는 54일 도과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계획서가 수강 신청 1주일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붙임】

강의계획서 전산입력기간 未준수 현황

순번	연번	성명	학부(과)	직급 (강사위촉일자)	학년도	학기	과목명	입력 기한	입력 일자	지연일
1	1	-	-	-	2016	1	운영체제 서버실습	'16. 2. 12.	'16. 2. 25.	13
2	2	-	-	-	2017	2	바리스타- 커피실무	'17. 8. 11.	'17. 8. 14.	3
3					2017	2	캡스톤 디자인	'17. 8. 11.	'17. 8. 14.	3
4	3	-	-	-	2017	2	프로젝트 실무(UI)	'17. 8. 11.	'17. 8. 17.	6
5	4	-	-	-	2017	2	프로젝트 실무(C)	'17. 8. 11.	'17. 8. 16.	5
6	5	-	-	-	2018	1	호텔외식 구매관리 실무	'18. 2. 9.	'18. 2. 12.	3
7	6	-	-	-	2017	2	리더십2	'17. 8. 11.	'17. 8. 16.	5
8					2017	2	부모교육	'17. 8. 11.	'17. 8. 18.	7
9	7	-	-	-	2017	2	유아동작 교육	'17. 8. 11.	'17. 8. 18.	7
10	8	-	-	-	2016	1	무역의 이해	'16. 2. 12.	'16. 2. 25.	13
11	9	-	-	-	2017	2	아동과학 지도	'17. 8. 11.	'17. 8. 12.	1
12	10	-	-	-	2017	2	직업과 비전	'17. 8. 11.	'17. 8. 12.	1
13	11	-	-	-	2016	1	마케팅 관리	'16. 2. 12.	'16. 2. 25.	13

순번	연번	성명	학부(과)	직급 (강사위촉일자)	학년도	학기	과목명	입력 기한	입력 일자	지연일
14	12	-	-	-	2016	2	부기기자제 회계	'16. 8. 12.	'16. 8. 23.	11
15							기업법	'16. 8. 12.	'16. 8. 23.	11
16	13	-	-	-	2016	1	안드로이드 앱개발	'16. 2. 12.	'16. 2. 18.	6
17	14	-	-	-	2017	1	기술의 이해	'17. 2. 10.	'17. 4. 5.	54
18	15	-	-	-	2016	2	Style work shop II	'16. 8. 12.	'16. 8. 23.	11
19	16	-	-	-	2017	2	UI구현 (인터랙티브)	'17. 8. 11.	'17. 8. 16.	5
20							캡스톤 디자인	'17. 8. 11.	'17. 8. 16.	5
21					2018	2	취 · 창업 진로멘토링	'18. 8. 10.	'18. 8. 13.	3
22	17	-	-	-	2017	2	복지시설 창업운영업 무	'17. 8. 11.	'17. 8. 16.	5
23	18	-	-	-	2017	2	양식파스타 조리실습	'17. 8. 11.	'17. 8. 14.	3
24							이태리요리 실습	'17. 8. 11.	'17. 8. 14.	3
25					2017	2	프랑스요리 실습	'17. 8. 11.	'17. 8. 14.	3

순번	연번	성명	학부(과)	직급 (강사위촉일자)	학년도	학기	과목명	입력 기한	입력 일자	지연일
26	19	-	-	-	2016	1	애덤엔 이브	'16. 2. 12.	'16. 3. 23.	40
27							신약성경의 이해	'16. 2. 12.	'16. 3. 23.	40
28	20	-	-	-	2016	2	구약성경의 이해	'16. 8. 12.	'16. 8. 23.	11
29							직업과 비전	'16. 8. 12.	'16. 8. 23.	11
30	21	-	-	-	2016	2	인간윤리 IV	'16. 8. 12.	'16. 8. 23.	11
31	22	-	-	-	2019	1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19. 2. 8.	'19. 2. 25.	17
32	23	-	-	-	2016	1	가족상담	'16. 2. 12.	'16. 2. 18.	6
33	24	-	-	-	2016	1	사용자 리서치	'16. 2. 12.	'16. 3. 2.	19
34							기술의 이해	'18. 2. 9.	'18. 2. 23.	14
35	25	-	-	-	2016	2	모바일웹 프로젝트	'16. 8. 12.	'16. 9. 20.	39
36							서비스 운영	'17. 8. 11.	'17. 8. 15.	4
37	26	-	-	-	2016	1	비즈니스 실무	'16. 2. 12.	'16. 2. 20.	8
38	27	-	-	-	2016	1	토익LC	'16. 2. 12.	'16. 2. 19.	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p>정규 · 계절수업 재수강자 성적부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2016~2017)」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정규학기 재수강 과목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계절수업 성적처리 또한 위의 정규학기 평가방법을 따르며, 「2016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운영계획」에도 계절학기 재수강 성적은 B+까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 AU는 2016학년도 1학기 AV의 ‘마케팅 조사’ 과목 재수강 학점을 A+로 부여하는 등 【불임】 ‘재수강자 성적부여 상한점 未준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위 AU 등 교수 49명은 위 AV 등 재수강자 49명이 수강한 58개 과목에 대해 학사운영규칙 상의 재수강자 성적 상한점인 B+보다 높은 A~A+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9명)

【붙임】

재수강자 성적부여 상한점 未준수 현황

연 번	학년도	학기	담당교원			학생 인적사항			과목명	학점	이전 성적	재수강 성적
			학부(과)	직급	성명	전공	학년	성명				
1	2016	1학기	-	-	-	-	-	-	마케팅 조사	3	F	A+
2	2016	1학기	-	-	-	-	-	-	전공 실기 I (보컬)	1	F	A+
3	2016	1학기	-	-	-	-	-	-	회계 원리	3	F	A+
4	2016	1학기	-	-	-	-	-	-	유통 관리	3	F	A
5	2016	1학기	-	-	-	-	-	-	기초 조리 기능실습	3	F	A+
6	2016	1학기	-	-	-	-	-	-	전공 실기 I (드럼)	1	F	A+
7	2016	1학기	-	-	-	-	-	-	체력 단련 I	2	F	A
8	2016	1학기	-	-	-	-	-	-	정신 건강론	3	F	A+
9	2016	1학기	-	-	-	-	-	-	특수 아동 이해	3	F	A
10	2016	1학기	-	-	-	-	-	-	수협 한국사I	2	D+	A+
11	2016	1학기	-	-	-	-	-	-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3	F	A
12	2016	1학기	-	-	-	-	-	-	형법 각론	3	F	A+
13	2016	1학기	-	-	-	-	-	-	전공외 국어III	2	F	A
14	2016	1학기	-	-	-	-	-	-	스포츠 사회학	2	F	A+
15	2016	1학기	-	-	-	-	-	-	간호 관리 학실습	2	F	A
16	2016	1학기	-	-	-	-	-	-	성인 간호학 실습III	2	F	A
17	2016	1학기	-	-	-	-	-	-	의학 용어 I	2	F	A+
18	2016	1학기	-	-	-	-	-	-	전공 취업 디자인	1	F	A

연 번	학년도	학기	담당교원			학생 인적사항			과목명	학점	이전 성적	재수강 성적
			학부(과)	직급	성명	전공	학년	성명				
19	2016	1학기	-	-	-	-	-	-	백석 인성 실천	1	F	A+
20	2016	1학기	-	-	-	-	-	-	애덤 앤이브	1	F	A
21	2016	1학기	-	-	-	-	-	-	영아 발달	3	F	A
22	2016	1학기	-	-	-	-	-	-	애덤 앤이브	1	F	A+
23	2016	1학기	-	-	-	-	-	-	의무 기록 관리학	2	D+	A
24	2016	1학기	-	-	-	-	-	-	의무 기록 관리학	2	F	A+
25	2016	2학기	-	-	-	-	-	-	광고 매체 전략	3	F	A
26	2016	2학기	-	-	-	-	-	-	청소년 지도 방법론	3	F	A+
27	2016	2학기	-	-	-	-	-	-	자바 프로 그래밍	3	F	A
28	2016	2학기	-	-	-	-	-	-	놀이 지도	3	F	A+
29	2016	2학기	-	-	-	-	-	-	전공외 국어Ⅱ	2	F	A+
30	2016	2학기	-	-	-	-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F	A+
31	2016	2학기	-	-	-	-	-	-	유아 발달	3	F	A
32	2016	2학기	-	-	-	-	-	-	자원봉 사론	3	F	A+
33	2016	2학기	-	-	-	-	-	-	아동 생활지도	3	F	A
34	2016	2학기	-	-	-	-	-	-	아동 생활지도	3	F	A
35	2016	2학기	-	-	-	-	-	-	글쓰기 와 의사소통	1	F	A
36	2016	2학기	-	-	-	-	-	-	의료 정보 관리학	2	F	A
37	2016	2학기	-	-	-	-	-	-	구약 성경의 이해	1	F	A+
38	2017	1학기	-	-	-	-	-	-	보육 실습	3	F	A
39	2017	1학기	-	-	-	-	-	-	언어 지도	3	F	A+

연 번	학년도	학기	담당교원			학생 인적사항			과목명	학점	이전 성적	재수강 성적
			학부(과)	직급	성명	전공	학년	성명				
40	2017	1학기	-	-	-	-	-	-	경호학 개론	3	F	A+
41	2017	1학기	-	-	-	-	-	-	데이터 베이스	3	F	A+
42	2017	1학기	-	-	-	-	-	-	사회 복지 개론	3	F	A
43	2017	1학기	-	-	-	-	-	-	전산 실무 I	2	F	A
44	2017	1학기	-	-	-	-	-	-	사회 복지 실천 기술론	3	F	A
45	2017	1학기	-	-	-	-	-	-	간호학 개론	1	F	A+
46	2017	1학기	-	-	-	-	-	-	인간 심리의 이해	2	D+	A
47	2017	1학기	-	-	-	-	-	-	지역 사회 복지론	3	F	A+
48	2017	2학기	-	-	-	-	-	-	호텔 인력자원 관리실무	3	F	A+
49	2017	2학기	-	-	-	-	-	-	정보보호 개론	3	F	A
50	2017	2학기	-	-	-	-	-	-	의료 정보 관리학	2	F	A
51	2017	2학기	-	-	-	-	-	-	병원 코디네이터	2	F	A
52	2017	2학기	-	-	-	-	-	-	정보 보호 개론	3	F	A
53	2017	2학기	-	-	-	-	-	-	전산 실무	3	F	A
54	2017	2학기	-	-	-	-	-	-	대인 관계	1	F	A+
55	2017	2학기	-	-	-	-	-	-	대인 관계	1	F	A+
56	2017	2학기	-	-	-	-	-	-	대인 관계	1	F	A
57	2016	계절	-	-	-	-	-	-	현장 실습 II	3	F	A+
58	2016	계절	-	-	-	-	-	-	현장 실습 II	3	F	A+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6	<p>장학금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안내」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백석문화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장학금(교외 지정 장학금, 생활비 및 근로성 장학금, 교내외 활동에 의한 상금 및 보상성 장학금 제외)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휴학 후 이연 등록한 AW에게 등록금(1,517,000원)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보상성 장학금 제외) 합계 2,717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에 위 AW 등 학생 2명에게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합계 3,41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붙임】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학과	학번	지원 학기	등록금	기 납부 등록금	장학금명	장학금	초과지급액
1	-	-	-	2018-2	1,517,000	1,517,000	국가장학금I유형	1,517	2,717*
							PIPES인성장학금	500	
							백석희망장학금	700	
							소 계	2,717	
2	-	-	-	2018-2	505,000	0	국가장학금I유형	505	700
							백석희망장학금	700	
							소 계	1,205	
합 계								3,922	3,417

* 2017-2학기 등록금 3,035,000원 중 국가장학금 2,650,000원 수혜 후 2017. 11. 6. 휴학하고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55조에 따라 기 납부 등록금의 1/2를 제외한 1,517,000원을 이연등록 처리하여 복학 첫 학기 등록금으로 이미 납부한 상황으로, 2017-2학기 수혜한 국가장학금 또한 반환 없이 이연 처리되었으므로 복학하는 학기에 대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이 불가하며, 교내장학금 수혜 또한 등록금을 초과함.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7	<p>교원 강의시수 배정 및 관련 규정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백석문화대학교 학칙」 제60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있고,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8조 및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전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하며, 시간배정 시수는 1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백석문화대학교 강사임용규칙」 제10조에 강사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 학기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책임시수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보직별 책임시수 감면 및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p>【전임교원 강의시수 미달 및 초과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AX가 책임시수(주당 12시간) 대비 5시간 미달되게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불임】 “전임교원 주당 책임시수 미달 및 초과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AX 등 전임 교원 20명이 적게는 주1시간에서 많게는 주5시간까지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책임시수 지침」에 따른 책임시수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4명)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강의시수 배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대비 수업시수에 미달(총 12시간)하거나 최대시수(주당 18시간) 대비 초과(총 60시간)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p> <p>【강사 및 입학관리처장의 강의사수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책임시수 지침」에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운영하면서도 「백석문화대학교 강사임용규칙(2016-2018)」의 강사 주당 수업시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존치하여 2019. 7. 1. 위 규칙의 개정 전까지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입학관리처장의 강의 책임시수 조정 요청(2016. 6. 7.)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해당 보직 책임시수를 7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면하여 적용하면서도 현재 까지 「백석문화대학교 교원책임시수 지침」에 조정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붙임】

전임교원 주당 책임시수 미달 및 초과 현황

연번	학부(과)	직급	교수명	학기	책임 시수	최대 시수	수업 시수	미달 시수	초과 시수	책임시수 감면 사유
1	-	-	-	2018-1학기	12	18	7	-5	-	-
2	-	-	-	2016-1학기	10	18	8	-2	-	'16.4.1. ~ 현재 ▲▲수석연구위원 (책임시수 10시수).
3	-	-	-	2016-2학기	12	18	10	-2	-	-
4	-	-	-	2019-1학기	12	18	10	-2	-	-
5	-	-	-	2016-1학기	12	18	11	-1	-	-
6	-	-	-	2018-1학기	12	18	19	-	1	-
				2018-2학기	12	18	22	-	4	
				2019-1학기	12	18	22	-	4	
				소계	36	54	63	-	9	
7	-	-	-	2018-1학기	12	18	22	-	4	-
				2018-2학기	12	18	22	-	4	
				2019-1학기	12	18	22	-	4	
				소계	36	54	66	-	12	
8	-	-	-	2017-2학기	12	18	23	-	5	-
				2019-1학기	12	18	19	-	1	
				소계	24	36	42	-	6	
9	-	-	-	2019-1학기	12	18	23	-	5	-
10	-	-	-	2017-2학기	12	18	19	-	1	-
				2018-2학기	12	18	21	-	3	
				소계	24	36	40	-	4	
11	-	-	-	2018-2학기	12	18	19	-	1	-
				2019-1학기	12	18	21	-	3	
				소계	24	36	40	-	4	
12	-	-	-	2018-2학기	12	18	20	-	2	-
				2019-1학기	12	18	20	-	2	
				소계	24	36	40	-	4	
13	-	-	-	2016-2학기	12	18	22	-	4	-
14	-	-	-	2018-1학기	12	18	19	-	1	-
				2018-2학기	12	18	19	-	1	
				2019-1학기	12	18	19	-	1	
				소계	36	54	57	-	3	
15	-	-	-	2019-1학기	12	18	19	-	1	-
16	-	-	-	2019-1학기	12	18	19	-	1	-
17	-	-	-	2016-1학기	12	18	21	-	3	-
18	-	-	-	2018-2학기	12	18	19	-	1	-
				2019-1학기	12	18	19	-	1	
				소계	24	36	38	-	2	
19	-	-	-	2018-1학기	12	18	19	-	1	-
20	-	-	-	2019-1학기	12	18	19	-	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8	<p>보강 未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석문화대학교 교원복무규칙」 제11조 제1항과 「백석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공무 또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강하게 될 경우 교과 담당교수는 사전에 휴강원과 보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보강일자와 시간 등을 공지하여 보강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강한 과목은 반드시 당해 학기에 보강하고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백석문화대학교 AY는 2017. 12. 20. 출장으로 결강한 '원가회계' 교과목에 대해 휴·보강원을 제출하지 않고,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는 등 【불임】 "휴·결강에 따른 보강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 학년도 1학기까지 위 AY원 등 교원 11명이 출장 등으로 휴·결강한 총 18개과목, 합계 37시간에 대하여 휴·보강원을 제출하지 않고,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11명)

【붙임】

휴·결강에 따른 보강 未실시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장 등 내역		결강 내역		
				구분	기간	과목명	결강교시	결강시간
1	-	-	-	출장	2017.12.20(수)	원가회계(A)	수3,4,5	3
						원가회계(B)	수6,7,8	3
				소계(2건)				6
2	-	-	-	출장	2019.05.28.(화)	대학생활과진로	화3	1
3	-	-	-	출장	2017.11.14(화)~17(금)	스킨스쿠버 다이빙기초(A)	금1,2	2
4	-	-	-	출장	2016.12.20(화)~21(수)	취업진로멘토링	수4	1
5	-	-	-	출장	2017.4.21(금)	아동권리와복지	금5,6	2
6	-	-	-	출장	2018.11.7(수)~8(목)	관광법규	수6,7,8	3
7	-	-	-	출장	2018.5.7(월)~13(일)	미슐랭레스토랑 요리	월7,8,9	3
						대학생활과진로	수4	1
				소계(2건)				13
8	-	-	-	출장	2018.5.1(화)	마케팅관리	화6,7	2
9	-	-	-	출장	2017.4.6(목)~7(금)	기업결산실무	목5,6,7	3
10	-	-	-	출장	2016.5.10(화)	글로벌외식경영실무(A)	화5,6	2
				출장	2016.11.9(수)	글로벌환대산업 창업마케팅(B)	수7,8	2
				출장	2016.11.21(월)	취업진로멘토링	월4	1
				출장	2017.5.11(목)	글로벌외식경영실무(A)	목5,6	2
						글로벌외식경영실무(B)	목8,9	2
				출장	2018.6.21(목)~22(금)	대학생활과진로	목6	1
소계(5건)								15
11	-	-	-	출장	2017.3.1(수)~4(토)	호텔외식구매관리실무	목7,8,9	3
합계(11명)						18개 과목		3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39	<p>전기공사 등 未분리 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데도,- 백석대학교는 2017. 11. 2. &&(대표 AZ)와 가칭 '교육연구동' 신축공사 중 교육동 부분 식당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금액 197,283천원)와 통신공사(금액 16,146천원)를 분리하지 않고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계약금액 2,401,768천원)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별도조치>○ 고발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40	<p>시설공사 시공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백석대학교 계약업무 처리 규칙」 제20조 및 「백석대학교 공사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공사가 부실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맞지 아니 할 때에는 대리인과 감독원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석대학교는 2015. 5. 19. &&(대표 AZ)와 계약한 “가칭 ‘교육연구동’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계약금액 44,440,300천원, 공사기간: 2015. 5. 19. ~ 2018. 3. 20)”를 추진하면서 기계실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대 높이가 당초설계(1200mm)보다 낮게 시공되었는데도(100mm) 그대로 준공 처리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 5.부터 2018. 7.까지 위 기계실 스테인레스 스틸 난간대 시공 등 7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함께 40,537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5명)○ 시정(회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혜관 관련 공사비 과다 지급액 23,149 천원 상당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동 관련 부적정 시공에 대해 관련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 상대방	공종 구분	시공 부적정 내역				비고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역	공사비 과다 지급액*				
1	가칭)교육연구동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2015.5.19.	44,440,300	&& (대표 AZ)	<건축> 잡철 공사	기계실 SST난간대 (H1200)	기계실 SST난간대 (H1100)	높이부족	224	재시공			
						이중벽 AL 그릴창 (점검구 겸용)	이중벽 SST 점검구	그릴창 아님	2,874				
		2015.6.30. ~ 2018.3.20.				두께12mm 강화 유리난간	SST 난간	재질상이	12,800				
						<건축> 미장 공사	주차장 연석	-	미시공				
2	가칭)교육연구동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2015.5.19.	1,108,864	▣▣ (대표 BA)	<소방> 방화 공사	방화실란트 마감	-	미시공	48				
		2015.6.30. ~ 2018.3.20.				에링홀(10F) 객석 유도등	-	미시공	1,035				
3	지혜관 화장실 개선공사	2018.6.26.	953,000	★★ (대표BB)	<건축> 타일 공사	벽타일 (1,696m ²)	벽타일 (1,432m ²)	계산착오	23,149	회수			
		2018.6.26. ~ 2018.7.25.											
합 계		공사 3건			7건				40,537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연번	지적사항	처분
41	<p>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p> <p>【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는 2016. 8. 23. ○○(대표 BC)과 계약한 “백석홀 스크류냉동기 설치 및 부대공사(계약금액 254,800천원)”를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640천원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1】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6. 8.부터 2018. 10.까지 위 공사 등 6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해 환경보전비 합계 2,762천원 상당을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p>【백석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관련> ○ 경고(2명)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에 포함조치(1명) <p>○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2,762 천원, 안전관리비 27,821천원 합계 30,583천원 상당을 ○○ 등 2개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 <p><② 관련></p> <p>○ 경고(1명)</p> <p>【백석문화대학교】</p> <p><①,② 관련></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백석문화대학교】</p> <p>-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 7. 9. ◎●(대표 BC)과 계약한 “백석 생활관 개별난방기 설치공사(계약금액 100,000천원)”를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데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60천원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2】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8. 7.부터 2018. 12.까지 위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해 환경보전비 합계 891천원 상당을 정산(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되,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p>【백석대학교】</p> <p>- 백석대학교는 2016. 5. 2. ◆◆(대표 BD)와 계약한 “본부동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계약금액 70,9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백석대학교 처분에 포함조치(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하지 않은 환경 보전비 891천원, 안전 관리비 8,577천원 합계 9,468천원 상당을 ◎◎ 으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 통보(국세청)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1,723천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3】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8. 10.까지 위 공사 등 8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합계 27,821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백석문화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문화대학교는 2018. 7. 9. ○○(대표 BC)과 계약한 “백석생활관 개별난방기 설치공사(계약금액 10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83천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4】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2018. 7.부터 2018. 12.까지 위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합계 8,577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환경보전비 정산(감액) 필요내역		계약 상대자
				미정산 금액*	감액사유	
1	백석홀 스크류냉동기 설치 및 부대공사	2016.8.23. (2016.9.10.)	254,800	640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2	목양동2층 EHP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7.10.31. (2017.11.30.)	46,000	11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3	체육관 음악관 EHP냉난방기 공장수리	2017.12.11. (2017.12.30.)	13,500	39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4	예술대학동 흡수식냉온수기교체 및 부대공사	2018.4.23. (2018.8.20.)	684,500	1,690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5	관광학부 특성화사업 실습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8.8.8. (2018.8.31.)	74,500	186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6	교내 냉난방기 고장수리 정비공사	2018.9.18. (2018.10.12.)	37,800	96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2,762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붙임 2】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환경보전비 정산(감액) 필요내역		계약 상대자
				미정산 금액*	감액사유	
1	백석생활관 개별난방기 설치공사	2018.7.9. (2018.7.31.)	100,000	260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2	교내 흡수식냉온수기 및 펌프수리 정비공사	2018.9.13. (2018.10.4.)	16,300	49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3	백석생활관(소망동) 개별냉방기 설치공사	2018.12.3. (2018.12.31.)	233,000	582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합 계				891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붙임 3】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안전관리비 정산(감액) 필요내역		계약 상대자
				미정산 금액*	감액사유	
1	본부동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2016.5.2 (2016.5.10.)	70,900	1,723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D
2	백석홀 스크류냉동기 설치 및 부대공사	2016.8.23. (2016.9.10.)	254,800	4,896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3	본부동 9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7.2.1. (2017.2.22)	20,000	495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4	체육관 음악관 EHP냉난방기 고장수리	2017.12.11. (2017.12.30.)	13,500	407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 BC
5	예술대학동 흡수식냉온수기교체 및 부대공사	2018.4.23. (2018.8.20.)	684,500	17,066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6	예술대학동 훼코일유니트 정비공사	2018.7.19. (2018.9.14.)	17,800	445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7	관광학부 특성화사업 실습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8.8.08. (2018.8.31.)	74,500	1,817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8	교내 냉난방기 고장수리 정비공사	2018.9.18. (2018.10.12.)	37,800	972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합 계				27,821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붙임 4】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안전관리비 조정(감액) 필요내역		계약 상대자
				미정산 금액*	감액사유	
1	백석생활관 개별난방기 설치공사	2018.7.9. (2018.7.31.)	100,000	2,083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2	교내 흡수식냉온수기 및 펌프수리 정비공사	2018.9.13. (2018.10.04.)	16,300	499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3	백석생활관(소망동) 개별냉방기 설치공사	2018.12.3. (2018.12.31.)	233,000	5,995	허위 세금계산서	◎◎ 대표 BC
합 계				8,577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